

학칙

2-1-1

규정번호	2-1-1
제정일자	1989.3.1
최근개정	2026.5.20.
개정차수	123차 개정
관리부서	학사지원팀 교무입학팀 학생복지팀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우리대학은 대한민국 교육의 근본이념에 입각하여 국가산업 발전에 필요한 전문적인 지식과 이론을 교수·연구하고 재능을 연마하여 국가발전에 필요한 전문직업인 양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명칭) 우리대학은 명지전문대학이라 한다.

제 3 조 (위치) 우리대학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가좌로 134(홍은2동 356-1)에 둔다.(개정 2021.09.27.)

제 4 조 (설치학과 및 입학정원) 우리대학에 두는 학과 및 입학정원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16.09.02.,2018.02.05.,2020.04.16)

제 2 장 수업연한과 재학연한

제 5 조 (수업연한) ① 우리대학의 수업연한은 2년 또는 3년으로 하고,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은 1년 또는 2년으로 한다.(개정 2021.09.27.,2024.8.6)

② 졸업에 필요한 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업연한을 단축할 수 있다. 이에 따른 절차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 6 조 (재학연한) 재학연한은 제한하지 않는다.

제 3 장 학년도·학기·수업일수 및 휴업일

제 7 조 (학년도) 학년도는 3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 8 조 (학기) ① 학기는 2학기 이상으로 한다.(개정 2019.12.11.)

② 제1항에 따른 학기는 교육상 필요에 따라 전공, 학년 또는 학위과정별로 달리 정할 수 있다.(항 신설 2019.12.11.)

③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절학기 및 학생의 현장적응력을 높이기 위하여 실습학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4.08.25., 항번호 변경 2019.12.11)

제 9 조 (수업일수) 수업일수는 학교의 수업일수와 교과별 수업일수로 구분한다.(개정 2018.11.12.)

① 학교의 수업일수는 매 학년도 30주 이상으로 한다.(신설 2018.11.12.)

② 총장은 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교육과정의 운영상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학교의 수업일수를 충족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 학년도 2주의 범위 내에서 학교의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다.(신설 2018.11.12.)

③ 교과별 수업일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학교의 수업일수의 범위 내에서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에 따라 수업일수를 단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학점당 이수시간(학점당 15시간 이상)의 이수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신설 2018.11.12.)

제 9 조의 2 (집중이수제) 학생들의 교육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9조제3항에 따라 교과별 수업일수를 단축하여 집중수업(이하 "집중이수제"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신설 2018.11.12.)

제 10 조 (휴업일) ① 정기휴업일은 다음과 같다.

1. 개교기념일(3월 9일)

2. 일요일

3. 관공서의 공휴일(개정 2016.05.16.)

② 하계·동계방학 기간은 매 연도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③ 임시휴업은 필요에 의하여 총장이 이를 정한다. 부득이한 경우 휴업일이라도 수업을 할 수 있다.

제 4 장 신 입 학

제 11 조 (입학시기) ① 입학할 허가하는 시기는 학년도 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시간제 등록 및 계약학과의 경우에는 매학기 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② 시간제등록생만을 대상으로 하는 시간제등록생의 수업개시일은 총장이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 12 조 (입학자격) 제1학년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 한다.

제 13 조 (입학지원절차) 입학할 희망하는 자는 입학원서를 작성한 후 총장이 정하는 소정의 절차에 따라 전형료를 첨부하여 입학원서 접수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 14 조 (입학전형) ① 신입학전형은 매 연도 관할청장이 정하는 전문대학 입학전형기본계획의 범위 내에서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가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② 고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 및 제40조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입학전형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총장이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제 14 조의 2 (대학입학전형공정관리대책위원회) ① 입학전형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대학입학전형공정관리대책위원회를 둔다.

② (기능) 대학입학전형공정관리대책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대학입학 부정방지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2. 입학전형업무 담당자 및 시설의 관리 통제에 관한 사항
3. 수험생의 이의제기에 대한 내부 심사에 관한 사항
4. 대학입학전형의 사전·중간·사후 자체감사에 관한 사항
5. 기타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성) 대학입학전형공정관리대책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대학입학전형공정관리대책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그 임무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2. 위원장은 기획실장이 되며, 부위원장 및 위원은 위원장의 제청에 의하여 총장이 위촉한다.
3.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업무를 총괄한다.(개정 2024.8.6.)

제 14 조의 3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 ① 입학전형제도의 개발 및 입학전형관리에 있어 주요 사항을 심의·결정하기 위하여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를 둔다.

② (기능)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대학입학전형 제도의 개발 및 계획에 관한 사항
2. 대학입학전형 관리기술의 개발에 관한 사항
3. 대학입학 적격자 선발기준 모형개발에 관한 사항
4. 대학입학 전형 관리업무의 주요사항(전형유형, 전형자료, 자격기준, 사정방법, 모집형태, 전형 일정, 모집인원의 배분 등)
5. 기타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성)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그 임무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2. 위원장은 총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교무처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위원은 부위원장의 제청에 의하여 총장이 위촉한다.(개정 2016.05.16., 2018.08.27)
3.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24.8.6.)

제 14 조의 4 (선행학습영향평가위원회) ① 입학전형 시 학과별 독자고사(논술 등 필답고사, 면접·구술고사, 신체검사, 실기·실형고사 및 교직 적성·인성검사 등)를 실시하는 경우 선행학습을 유발하는지에 대해 심의·평가하기 위하여 선행학습영향평가위원회를 둔다.(제정 2016.05.16., 개정 2024.8.6)

② (기능) 선행학습영향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입시고사의 고교 교육과정 내 출제 계획수립 및 출제 여부에 관한 평가 사항
2. 입시고사의 출제영역, 내용, 방법, 채점기준 및 시행에 관한 평가 사항
3. 자체영향평가 결과의 차년도 입학전형에 반영에 관한 사항

4. 평가결과에 따른 관리 및 입시고사의 개선에 관한 사항
5. 기타 자체영향평가 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6. 기타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성) 선행학습영향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내외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교무처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위원은 우리대학 교직원 및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을 갖춘 외부인으로 구성하되 총장이 임명한다.(개정 2018.08.27)
3. <삭제(2024.8.6.)>

제 15 조 (입학허가) 입학허가는 교수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이를 행한다.

제 15 조의 2 (2중 학적의 금지) 우리대학 학생으로서 2중 학적을 가질 수 없다.

제 5 장 편입학·재입학 및 전과

제 16 조 (편입학) ① 전문대학 이상에서 학점을 취득한 자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는 다음 각 호의 1과 같이 편입학할 수 있다. 다만, 2학년 2학기 편입은 3년제 학과에 한한다.(개정 2016. 3. 1)

1. 1학년 2학기 편입은 18학점 이상 취득자
2. 2학년 1학기 편입은 36학점 이상 취득자
3. 2학년 2학기 편입은 54학점 이상 취득자
4. (삭제 2016. 3. 1)

② 편입학은 각 학과별로 입학정원의 범위 내에서 정원에 여석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다만, 특례편입학 등 법령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5.2.16)

③ 편입학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신설 2015.2.16)

제 16 조의 2 (재입학) ① 제적자에 대한 재입학은 동일 학과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② 타 대학(교)에 2중 학적을 보유한 자 및 학칙 제44조(징계)에 의하여 제적된 자는 재입학을 허가하지 않는다.(개정 2023.09.26.)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학생활동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1987년 7월 11일부터 1993년 2월 24일까지 제적된 자(학칙의 다른 규정에 의하여 제적된 자로서 사실상 학생활동과 관련되어 제적된 자를 포함한다.) 중 총장의 허가를 받아 재입학하는 자의 경우에는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필요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정한다.

제16조의3 <삭제(2023.12.13.)>

제17조 (전과) ① <삭제(2024.8.6.)>

② 전과 인원은 전입·전출 학과별로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③ 전과한 자는 전입학과에서 지정하는 소정의 전공과목 전부를 이수하여야 한다. 전입학과에서 심의하여 인정과목을 정하되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④ 제14조 제2항에 따라 특별전형 및 산업체위탁교육생으로 입학한 자도 전과할 수 있다.
- ⑤ (삭제 2017.06.20.)
- ⑥ (개정 2017.06.20., 삭제 2025.8.12)
- ⑦ 전과를 희망하는 자는 해당 학기 등록을 필하여야 하며 전과한 학과의 등록금이 이전 학과와 다를 경우 차액을 납부 또는 환불한다.
-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 규정에도 불구하고 학생의 권리를 침해하는 사안이 발생한 경우 총장의 승인을 받아 전과할 수 있다.(개정 2024.8.6.)
- ⑨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학생은 타 학과로 전과할 수 없다.(신설 2022.08.10.)

제17조의2 <삭제(2023.12.13.)>

제18조 (삭제 2002. 3. 1)

제 6 장 휴학·복학·자퇴 및 제적

- 제 19 조 (휴학) ① 임신·출산·육아, 질병, 병역의무,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4주 이상 수업할 수 없을 때는 휴학원을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얻어 휴학할 수 있다.(개정 2024.12.18.)
- ② 질병으로 인한 휴학은 종합병원 의사가 발행한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③ 창업으로 인한 휴학은 창업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신설 2015.2.16)
 - ④ 일반 휴학은 1회에 한하여 허가하며 그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임신·출산·육아 및 병역의무로 인한 휴학기간은 휴학 횟수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부득이한 경우 총장의 승인을 얻어 일반 휴학을 추가로 허가할 수 있다.(개정 2015.2.16.,2023.01.30.,2024.12.18)
 - ⑤ 창업 휴학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2회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신설 2015.2.16)
 - ⑥ 휴학한 자는 휴학기간 중 학적을 보유한다.
 - ⑦ 임신·출산으로 인한 휴학은 임신·출산을 증빙할 수 있는 병원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하고, 육아로 인한 휴학은 자녀의 나이가 만12세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신설 2024.12.18.)

제 19 조의 2 (복학) ① 휴학한 학생은 휴학기간 만료시 다음 각 호의 1과 같이 복학하여야 한다.

- 1. 일반 및 창업휴학자 : 휴학기간 만료학기 2주 전(개정 2015.2.16)
- 2. 군입대휴학자 : 전역 후 복학하여야 할 학기 시작 후 4주 이내

② 휴학한 학생이 휴학기간 만료 이전이라도 복학을 원할 때는 심사하여 복학을 허용할 수 있다.

제 20 조 (자퇴) 자퇴하고자 하는 자는 보호자 연서로 사유를 명시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 21 조 (제적) 학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는 총장이 제적할 수 있다.(개정 2016.05.16.)

1. 휴학기간 종료 후 4주가 넘도록 이유없이 복학하지 아니한 자
2. 신체허약 등으로 인하여 학업성취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된 자
3. 타교에 입학한 자
4. 품행이 불량하여 개전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된 자
5. 정당한 이유없이 매 학기 소정기간에 등록을 완료하지 못한 자
6. <삭제(2024.8.6.)>

제 7 장 교과과정 및 수업

제22조(교육과정) ① 교육과정은 교양, 전공, 교직으로 구분하고, 전공은 학과별 전공과정 및 통합전공으로 구분한다.(개정 2015.12.03. 2017.06.20)

② 교육과정은 교육과정운영규정에 따르며, 타 과 전공교과를 이수하였을 시 일반선택으로 인정하고 오프캠퍼스 교과목은 일반선택 또는 교양으로 인정한다.(개정 2015.12.03., 2019.12.11., 2026.2.12.)

③ 현장실습교과는 전공(학과별 전공 및 통합전공)과정으로 운영하며 4주 이상의 단기현장실습(계절제)과 학기단위의 실습학기제(학기제)로 구분하여 실시 가능하다. 단, 학과 특성을 고려하여 필수교과목으로 지정(야간과정 및 산업체위탁생 제외)할 수 있다.(개정 2014.08.25., 2017.06.20)

④ (현장중심의 역량 및 직무기반 교육과정) 산업현장에서 요구되는 직무능력완성도가 높은 현장형 인재 양성을 위해 산업체 수요 및 직무분석과 현장중심의 역량 및 직무기반의 교육과정을 개발·운영할 수 있다.(신설 2015.08.24., 개정 2021.09.27)

⑤ 직업기초능력(핵심역량 포함) 기반의 교육과정을 개발·운영할 수 있다.(신설 2015.12.03., 개정 2021.09.27)

제22조의2(전공이수체계) ① 우리대학의 학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공 중 하나 이상의 전공을 선택하여 이수한다.(조신설 2021.09.27.)

1. 학생이 속한 학과가 제공하는 전공
2. 학생이 속한 학과 이외의 전공을 이수하는 복수전공
3. 소정의 학점으로 별도의 전공을 이수하는 소단위 학위제(나노 및 마이크로디그리) 관련 전공
(개정 2025.3.31.)
4. 둘 이상의 학부(과)가 연계·융합하여 제공하는 전공
5. 대학이 교육과정 공동운동을 통하여 국내 대학 또는 외국 대학과 연계·융합하여 제공하는 전공
6. 주 전공 이외 타 학과(전공) 및 모듈전공의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부전공(신설 2022.08.10.)
7. 학생이 스스로 교육과정을 구성하여 학생설계전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학생설계 전공(신설 2026.2.12.)

② 제①항에 따른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22조의3(자유전공학과 운영) ① 우리대학에는 입학 후 학과(전공)을 선택하는 자유전공학과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자유전공학과 학생의 학과(전공)배정은 학생의 신청을 받아 융합교육지원센터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으로 한다. 단, 제22조의2 제①항 7호 단서에 따라 학생이 학생설계전공으로 정할시 학생설계전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한다.(개정 2026.2.12.)

③ 자유전공학과 학생의 학과(전공) 배정 및 학생설계전공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26.2.12.)

[본조신설 2024.8.6.]

제 23 조 (평생교육과정 운영) ① 우리대학에는 평생교육 및 원격교육과정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평생교육 및 원격교육과정은 우리대학에 설치된 학과와 유사한 분야에 한하여 설치한다.

③ 평생교육 및 원격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하되 관할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3조의2(전공심화과정 운영) ① 고등교육법 제49조, 제50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에 의거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의 계속교육을 위하여 전공심화과정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전공심화과정운영규정에 따른다.(개정 2016.3.1.,2024.8.6)

② (수업연한 및 재학연한) 전문대학의 과정을 포함하여 4년 이상으로 하고 재학연한은 제6조에 따른다.

③ (설치학과 및 모집인원) 대학전체 전문학사학위과정 입학정원의 20% 이내로 하고, 모집단위별 전문학사학위과정 입학정원의 100% 이내에서 전공심화과정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할청의 인가를 받아 시행한다.(개설과정의 모집단위 및 이수학위는 [별표5]와 같다.)(개정 2015.2.16., 2016. 9. 2., 2018. 2.5, 2020.04.16.,2021.03.31)

④ (전형방법 및 모집일시) 전공심화과정의 전형방법 및 모집일시는 총장이 별도로 정한다.

⑤ (학위이수학점) 전공심화과정 학사학위 취득 이수학점은 1년제 학과 24학점, 2년제 학과 55학점 이상으로 한다.(개정 2018.11.12)

⑥ (학기이수학점) 매 학기 12학점 이상 최대 18학점까지 이수함을 원칙으로 하되, 연간 최대 36학점을 초과하여 이수할 수 없다. 다만, 최종학기 이수학점은 졸업에 필요한 최소학점을 이수할 수 있다.

⑦ (학기 및 수업일수) 전공심화과정의 학기 및 수업일수에 대한 사항은 제8조부터 제9조까지 규정에 따른다.(개정 2024.8.6.)

⑧ (전공심화과정운영위원회) 전공심화과정의 주요사항을 심의 하기 위하여 전공심화과정운영위원회를 두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전공심화과정 모집인원(인가신청) 조정 및 전형관리에 관한 사항(개정 2021.08.19.)
2. 전공심화과정 입학 및 졸업에 관한 사항(개정 2025.12.4.)
3. 전공심화과정 교육과정 편성 및 교육운영 점검에 관한 사항(개정 2021.08.19.)

4. 전공심화과정 수요자 의견수렴 및 환류실적 관리에 관한 사항(개정 2021.08.19.)
5. 전공심화과정 운영진단(자체평가) 및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개정 2021.08.19.)
6. 기타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⑨ 전공심화과정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 23 조의 3 (전공심화과정에 대한 학위수여) 전공심화과정 운영에 따른 전공심화과정에 입학하여 학칙이 정하는 과정을 이수한 자에게는 학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제 23 조의 4 (장애학생 학점등록) ① 총장이 인정하는 장애학생에 대하여는 학점등록을 허가할 수 있으며, 학점등록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② 제1항에 의하여 총장이 인정한 장애학생의 수업연한 및 재학연한은 제한하지 아니한다.

제 23 조의 5 (학점은행제 운영) ① 학점인정등에 관한법률에 따라 우리대학에 설치된 학과와 관련된 분야에 대하여 학점은행제 과정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② 학점은행제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교육부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 및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 지침」에 따른다.(개정 2016. 9.27)

제 23 조의 6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에 의한 학위수여) ①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일정한 학점을 인정받은 자가 우리대학 총장이 수여하는 학위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2.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 학위수여 요건에 따라 전공 45학점(전필포함) 이상, 교양 15학점 이상, 총80학점 이상을 인정받은 자 또는 전문학사 소지자로서 본인의 학위전공과 다른 전공 36학점(수업연한이 3년인 경우 42학점) 이상을 인정받은 자(개정 2018.11.12.,2024.8.6)

3. 우리대학에서 48학점(다른 전공의 경우 36학점 또는 42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

4. (삭제 2018.11.12.)

② 우리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에는 정규교육과정에서 취득한 학점, 시간제등록을 통하여 취득한 학점, 학점인정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의거 평가인정받은 학습과정을 이수하여 취득한 학점을 모두 포함한다.(개정 2018.11.12.)

③ 제1항 학위수여 요건을 충족하는 자에게는 별지 제3호 서식의 학위를 수여한다.(개정 2017.02.27., 2018.11.12.)

④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학위를 받은 자에 대해서는 그 학위를 취소할 수 있다.(신설 2018.11.12.)

제 23 조의 7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에 의한 학위수여 절차) 제23조의 6의 학위수여 요건을 충족한 자가 대학의 장이 수여하는 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학점은행제 학점인정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한다.(조 신설 2018.11.12.)

① 대학의 장의 학위 수여를 받고자 하는 학습자는 대학의 장 학위신청서 및 관련 증명 서류를 대학이 정한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학위수여예정자 명단을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에게 제출하고 학위수여여부 확인을 하여야 한다.
- ③ 대학의 장에 의한 학위번호 부여한 후 그 명단을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에게 통보하며 학위번호는 ‘대학-학점-연도-일련번호’ 형식으로 한다.
- ④ 학점은행제과정 등록생의 학적을 별도로 관리하며, 학위수여된 자의 학점인정내역 등 학적에 관한 자료는 교무처 학사지원팀에 이관하여 관리한다.
- ⑤ 학위수여된 자에게 학위증, 학위증명서, 성적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해당 증명서에는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학칙 제23조 6의 규정에 의한’ 학위임을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

제 23 조의 8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에 의한 학위의 종류) ① 제23조의 6의 학위수여 가능한 학위의 종류 및 전공은 다음 각 호와 같다.(조 신설 2018.11.12.)

- 1. 우리대학 정규학과 교육과정 중 학점은행제 표준교육과정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전공에 한한다.
- 2. 전공명이 유사할 경우 학위수여 및 유사전공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유사성 심의를 하여야 하며 학위수여 및 유사전공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② 학점은행제 대학의 장에 의한 학위종별표는 별표 7호에 따른다.

제 23 조 9 (계약에 의한 학과의 설치운영)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 등과의 계약에 의하여 계약학과(이하 “계약학과”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16.3.1., 2017.06.20., 조번호 변경 2018.11.12., 개정 2022.02.23)

제 23 조의 10 (계약학과 정원) 모집인원은 제23조의11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입학정원의 각 100분의 20 이내로 하며, 계약학과의 편성 및 모집정원은 별표2와 같다.(개정 2021.12.02., 2022.02.23., 2022.08.10)

제 23 조의 11 (계약학과 지원자격 및 선발) ① 계약학과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본 학칙이 정한 자격을 갖추고 계약학과 설치·운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16.3.1.)(조번호 변경 2018.11.12.)

-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 등이 채용을 조건으로 학자금 지원계약을 체결하고, 특별한 교육과정의 운영을 요구하는 경우(채용조건형, 조기취업형 포함) (개정 2016.3.1., 2022.02.23)
- 2.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 등이 그 소속직원의 재교육이나 직무능력향상 또는 전직교육을 위하여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면서 교육을 의뢰하는 경우(재교육형) (개정 2016.3.1.)
- 3. 산업체 등이 입학단계에서 채용을 보장하고, 본조 제1호 내지 2호를 결합하여 교육과정의 운영을 요구하는 경우(조기취업형)(호신설 2021.12.02.)

② 입학 선발절차는 본 학칙과 제규정에 따르되, 특별전형으로 선발할 수 있다.(개정 2016.3.1.)

제 23 조의 12 (계약학과 산업체부담금 및 학생 납입금) ① 계약학과를 설치하는 경우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 등의 부담금은 계약학과의 운영에 필요한 학생 1인당 경비의 100분의 50 이상이어야 한다.(개정 2016.3.1., 2017.06.20)(조번호 변경 2018.11.12.)

② 계약학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계약에 따라 산업체 부담금과 학생 납입금으로 구분하여 학기별로 부과하고 산업체 부담금은 산업체에서 직접 납부하여야 한다.(신설 2016.3.1., 개정 2017.06.20)

제 23 조의 13 (계약학과 교육과정 편성·운영 및 학기·수업일수) ① 교육과정의 편성은 이미 설치되어 있는 학과 또는 유사학과의 교육과정을 준용하여 운영하되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의 요구에 따라 일부 주문식으로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7.06.20.)(조번호 변경 2018.11.12.)

② 계약학과의 학기 및 수업일수에 대한 사항은 제8조부터 제9조까지 규정에 준한다.(신설 2017.06.20.,2024.8.6)

③ 산업실무연수를 위하여 이동수업 및 현장실습수업을 운영할 수 있다.(항신설 2021.12.02.)

제 23 조의 14 (계약학과 설치·운영 기간 및 재학생 보호) (조번호 변경 2018.11.12.) ① 계약학과 설치·운영 기간은 위탁교육생의 전문학사 학위취득이 가능하도록 4학기제 이상으로 한다. 단, 조기취업형 계약학과는 3학기제 이상으로 설치·운영하며 졸업시 전문학사 학위를 수여한다.(개정 2018.12.10.,2021.12.02.,2022.02.23)

② 계약학과가 설치·운영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폐지되는 경우, 계약학과를 운영하는 학과·학부에서 남은 기간의 교육을 맡도록 하되 학생의 졸업 시 소속은 기존 계약학과로 한다. 당해 계약학과에 재적하는 학생의 학업이수, 납입금 등에 관한 제반사항은 우리대학의 재적생과 동일하게 적용한다.(개정 2016.3.1.,2024.8.6)

③ 계약학과 학생이 산업체 등에서 본인의 원에 의하여 퇴직하는 경우, 징계해고, 계약기간 만료로 퇴직한 경우에는 입학 취소 및 제적처리 한다.(개정 2016.3.1.)

④ 산업체 등의 도산, 구조조정, 권고사직 등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퇴직한 경우나 임금체불·계속되는 휴업(휴직)·사업장 이전·통근이 불가능한 지역으로의 전근 등으로 인한 자진퇴사의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으며, 학생 부담금은 계약에 따른다.(신설 2016.3.1.)

제 23 조 15 (협약에 의한 학과의 설치·운영) 우리대학과 실업계고, 산업체 및 지방자치단체가 협약에 의해 학과(이하 “협약학과”라 한다)를 설치·운영 할 수 있으며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조번호 변경 2018.11.12.)

제 23 조의 16 <조삭제(2022.08.10.)>

제 23 조의 17 (시간제등록) (조번호 변경 2018.11.12.) ① 우리대학에 고등교육법 제36조에 의거 시간제등록과정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등록자격은 대학(교)의 휴학생 및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인정자로 한다.

③ 등록인원은 총 입학정원의 10% 이내로 하며, 시간제등록생의 입학정원은 별표6와 같다.

(개정 2015.2.16., 2016. 9. 2., 2018.2.5)

④ 교육과정은 통합반과 시간제등록생만을 대상으로 하는 별도반으로 편성하여 각각 운영하며, 취득학점은 매학기 12학점 및 연간 24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

⑤ 시간제등록생에 관한 선발방법, 등록금, 등록방법 등 기타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⑥ 시간제등록생만을 대상으로 하는 시간제등록생의 수업일수는 4주 이상으로 한다.

⑦ 시간제등록생만을 대상으로 하는 수업은 주간수업, 야간수업, 계절수업, 방송·통신에 의한 수업, 현장실습수업 등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제 23 조의 18 (공개강좌) (조번호 변경 2018.11.12.) ① 교양 또는 실무·전문분야에 관한 이론과 응용지식을 보급하기 위하여 공개강좌를 개설할 수 있다.

② 공개강좌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23조의19(정원외 외국인 유학생 전담학과 설치 및 운영) (신설 2026.3.30.) ①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7호 나호 에 따른 외국인 유학생 전담학과(이하“유학생 전담학과”라 한다.)를 별표 9와 같이 설치할 수 있다.

② 유학생 전담학과의 모집,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학기 및 수업시수, 졸업 등 운영에 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24조(교과이수단위) ① 교과이수 단위는 학점으로 하고, 1학기 15시간 이상의 강의를 1학점으로 한다.

② 수업연한 2년제 과정의 졸업에 필요한 학점은 교양교과목 6학점 이상, 학과별 전공교과목 및 통합전공교과목 45학점 이상을 포함하여 75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단,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및 학생설계전공의 경우에는 따로 정한다.(개정 2015.12.03., 2017.06.20., 2018.08.27., 2018.11.12., 2022.02.23.,2023.01.30., 2026.2.12.)

③ 수업연한 3년제 과정의 졸업에 필요한 학점은 교양교과목 10학점 이상, 학과별 전공교과목(교직교과목 포함) 및 통합전공교과목 66학점 이상을 포함하여 110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단, 학생설계전공의 경우에는 따로 정한다.(개정 2015.12.03., 2017.06.20., 2018.08.27., 2018.11.12., 2019.06.17.,2023.01.30., 2026.2.12.)

④ 학생은 매 학기 12학점 이상 이수함을 원칙으로 하되, 23학점을 초과하여 이수하지 못한다. 단, 3년제 과정의 최종학기 재학생은 10학점이상, 재등록자·최종학기 재입학자는 졸업에 필요한 최소학점을 이수할 수 있다.(개정 2019.02.27.)

⑤ 계절학기에서 취득할 수 있는 학점은 6학점 이내로 한다. 단,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초과 할 수 있다.

⑥ 현장실습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⑦ 신입학자 중 국내·외의 타 대학(교) 및 이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에서 학점을 취득하였거나, 관련된 근무기관의 경력이 있는 경우, 관련학과의 의견을 수렴하여 교양·전공과목 학점에 한하여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4분의 1 이내에서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외국대학과의 교육과정 공동 운영에 의해 취득한 학점인정의 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해서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15.2.16., 2018.08.27., 2018.11.12)

⑧ 매학기 개설 교과목과 유사한 관련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에는 전공과목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⑨ 국내 · 외의 고등학교와 국내의 각종 학교에서 대학교육과정에 상당하는 교과목을 이수한 경우에는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⑩ 군 복무중인 휴학생의 경우 원격 수업을 수강하여 출석 및 성적을 인정받을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⑪ 다른 학교·연구기관 또는 산업체 등에서 행한 교육·연구 또는 실습 등을 특정한 교과목의 이수로 인정할 수 있으며, 세부적인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신설 2014.08.25.)

⑫ <삭제(2025.12.4.)>

⑬ K-MOOC(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 개설 강좌 중 대학이 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과목을 수강한 후 이수증을 제출한 경우에는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신설 2020.09.08., 개정 2025.9.30.)

⑭ 자기주도적 진로탐색 활동을 스스로 설계·수행하고, 이를 평가하여 학점을 인정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신설 2020.03.30.)

제 24 조의 2 (교육과정의 연계운영) ① 고등교육법시행령 제59조에 의거 직업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교육과정을 연계 운영할 수 있다.

② 군 복무중인 휴학생의 경우 원격 수업을 수강하여 출석 및 성적을 인정받을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③ 교육과정 상호 연계운영의 대상을 실업계고등학교·대학 및 산업체로 하되 연계운영에 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 24 조의 3 (외국대학과의 교육과정 공동운영) ① 전문학사과정 및 전공심화과정에 외국의 교육과정 공동운영 협약대학과 공동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9.10.30)

② 교육과정 공동운영 및 학점인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 25 조 (수업) ① 수업은 주간수업, 야간수업, 원격수업 및 현장실습 등의 방법에 의하며, 세부운영방법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14.08.25)

② 매 학기 개설 교과목은 입학 당시 승인된 교육과정을 기준으로 총장이 공고한다.

③ 감염병 등에 따른 위기단계 발생 시 대학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신설 2020.04.16.)

제 25 조의 2 (교수시간) ① 교원의 교수시간은 매 학년도 30주(매 학기당 15주) 이상을 기준으로 한다.

② 전임교원의 책임시간은 주당 9시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보직교원, 겸임교원, 초빙교원 등의 책임시간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18.11.12., 2020.07.28)

제 8 장 성적평가 및 졸업

제26조(평가시험) ① 성적평가는 주관식 시험 및 객관식 시험 등 교과목 운영에 따른 다양한 방법으로 실시하되, 그 실시에 관하여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16.12.28.)

② 각 교과목 총 수업시간 수의 1/4을 초과하여 결석한 자는 당해 과목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단, 질병·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할 시에는 추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개정 2026.3.30.)

③ 학과의 특성에 따라 필요한 경우 졸업에 필요한 시험을 부과할 수 있다.(개정 2016.3.1.)

제 27 조 (성적) ① 학업성적은 각 교과목을 100점 만점으로 하고, 출석상황·평소학습성적·과제 및 시험성적 등을 종합평가한다. 다만, 실험실습·실기 및 직무역량(NCS기반, MJC기반) 교과목 등 기타 이에 준하는 특정교과의 성적평가는 따로 이를 정할 수 있다.(개정 2015.12.03., 2021.09.27., 2022.12.13)

② 학업성적은 다음과 같이 분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교과목 특성에 따라 등급에 따른 배점을 조정할 수 있다. 각 교과목의 강좌별 급제는 D⁰ 이상으로 하되 성적평가를 점수로 표시할 필요가 없는 의무이수 교과목의 실험실습 등에 있어서는 P를 급제로 한다.(개정 2023.01.30.)

등 급	배 점	평 점	비 고
A+	100 ~ 95	4.5	
A0	94 ~ 90	4.0	
B+	89 ~ 85	3.5	
B0	84 ~ 80	3.0	
C+	79 ~ 75	2.5	
C0	74 ~ 70	2.0	
D+	69 ~ 65	1.5	
D0	64 ~ 60	1.0	
F	59 이하	0	
P	-	불계	

③ (삭 제)

④ 성적평가 업무를 합리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학생성적평가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⑤ 성적배점 및 분포에 대하여는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제 28 조 (삭 제)

제 29 조 (성적의 취소) 이미 인정된 성적이 과오 또는 부정행위에 의한 것일 때는 이를 취소한다.

제 30 조 (경고) 성적평가결과 성적이 불량하고 탈락이 예상되는 자에 대하여는 이를 경고하여야 한다. 그 기준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 31 조 (졸업) ① 소정의 전과정을 이수하고 제24조 제2항 및 제3항의 졸업요건을 갖춘 자에게 졸업자격을 부여하고 별표1부터 별표2까지 및 별표4, 별표8의 구분에 따라 별지 제1호 또는 제2호의 전문학사 학위를 수여한다.(개정 2019.02.27., 2022.08.10.,2024.8.6)

② 1997년도 이전에 졸업한 자에 대하여는 본인의 신청에 따라 전 항의 구분에 의거 별지 제2호의 전문학사학위 증서를 수여할 수 있다.

③ 전공심화과정의 전과정을 이수하고 제23조의2 제5항의 졸업요건을 갖춘 자에게 졸업자격을 부여하고 별표5의 구분에 따라 별지 제4호의 학사 학위를 수여한다.(개정 2015.2.16.)

④ 복수전공, 연계전공, 융합전공, 부전공 이수자는 주 전공 및 기타 전공 이수사항을 병행 표기하여 학위를 수여하며, 기타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항 신설 2019.02.27., 2022.08.10.)

⑤ 소단위 학위제 이수자는 이수사항을 표기하여 증서를 수여하며, 기타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신설 2025.3.31.)

제 31 조의 2 (명예졸업) ① 우리대학에 학적을 두었다가 제적된 자로서 학교의 명예를 빛낸 자 또는 총장이 인정하는 자에 대하여 명예학위증서를 수여할 수 있다.

② 명예학위수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 31 조의 3 (삭제 2014.06.09.)

제 32 조의 3(학위취득 유예) ① 학칙 제24조(교과이수단위) ②항 및 ③항의 요건을 충족한 자로 본인이 원하는 경우 1년 이내의 범위 안에서 학위취득을 유예할 수 있다.(조 신설 2019.02.27.)

② 기타 학위취득 유예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 31 조의 4 (복수(공동)학위제) ① 외국대학과의 교육과정 공동운영 협약에 의한 전과정을 이수한자에게 협약대학과 공동명의로 학위를 수여 할 수 있다. 단, 협약에 의해 외국대학이 우리대학에서 제공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우리대학의 학위를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19.10.30)

② 복수(공동)학위수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 31 조의 5 (수료) ① 소정의 학점을 이수하고도 진급 또는 졸업사정에서 탈락된 자에게는 수료증명서를 수여할 수 있다.

② 수료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 32 조 (삭 제)

제 32 조의 2 (학위의 취소) 제31조부터 제31조의4까지 규정에 의거하여 학위를 수여받은 자 중에서 부정적인 방법으로 학위를 취득한 경우 심의위원회를 거쳐 학위를 취소할 수 있다.(신설 2015.2.16.,개정 2024.8.6)

제 9 장 학생활동

제 33 조 (총학생회 조직) ① 학생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건전한 학풍을 조성하며, 민주적인 자치능력과 지도자적 자질을 배양하기 위하여 우리대학에 총학생회를 둔다.

② 우리대학 학생은 입학허가와 동시에 총학생회 회원이 되며, 제적 또는 퇴학과 동시에 회원

자격을 상실한다. 단, 휴학 및 유기정학 이상의 징계를 받은 학생은 그 기간 중 회원자격이 정지된다.

③ 총학생회의 부서 및 기구의 구성과 임원, 기타 학생대표의 임기 및 선임방법 등 총학생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는 총학생회의 회칙으로 정한다.

제 34 조 (총학생회 회비) 총학생회 회원은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 35 조 (학생자치기구의 범위) 학생자치기구는 총학생회, 동아리연합회, 학과 학생회를 포함하며, 신규 학생자치단체를 조직하고자 할 때는 학생지도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24.5.7.)

제 36 조 (학생 자치활동의 범위) 학생 자치활동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

1. 학술·기술·예술 및 체육활동
2. 학교 또는 주변의 화재 등 각종 재난시 방재 및 지원활동
3. 지역사회 및 각 분야에 대한 봉사활동

제 37 조 (학생활동의 금지) 학생단체 또는 학생은 우리대학 설립정신 및 학생 신분에 벗어난 활동을 할 수 없다.(개정 2023.08.09.)

제 38 조 (학생지도) ① 총장은 매 학년초 학생지도 및 육성계획을 세워 학생지도를 분담시킨다.

② 학생단체 또는 학생이 외부인사 초청·집회·인쇄 및 공고물의 첨부 또는 배부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38 조 2 (집단활동) ① 학생단체는 집단활동 진행 시 안전사고 및 인권침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집단활동 안전확보 지침에 따라 지도 관리한다.(신설 2016. 9. 2)

② 학생자치기구는 내·외부 집단활동 및 행사 진행 시 연대책임자(교·직원 및 학생)를 지정하고 책임을 부여한다.(신설 2016. 9. 2, 개정 2024.5.7)

③ 집단활동으로 인한 인권침해 발생 시 가해자 및 연대책임자에 대한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한다.(신설 2016. 9. 2)

제 39 조 (학생지도위원회) ① 학생자치활동 지도 및 학생복지 지원을 위하여 학생지도위원회를 둔다.(개정 2024.5.7.)

② 학생지도위원회는 우리대학 전임교수 중에서 총장이 위촉하는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24.5.7.)

③ 학생지도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개정 2024.5.7.)

1. 학생자치기구 회칙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개정 2024.5.7.)
2. 학생자치기구 구성에 관한 사항(개정 2024.5.7.)
3. 학생자치기구의 회비책정·예산의 편성 및 결산에 관한 사항(개정 2024.5.7.)
4. 학생자치활동 및 학생복지 관련 사항(개정 2024.5.7.)
5. 기타 학생 지원 전반에 관한 사항(신설 2024.5.7.)

제 40 조 (효력정지) 학생자치기구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 사태에 있어서는 그 활동이 정지된다.

- 제 40 조의 2 (장애학생의 지원) ① 우리대학에 재학 중인 장애학생의 수업, 학내활동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
- ② 장애학생의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 10 장 규율과 상벌

- 제 41 조 (규율) 학생은 학칙을 준수하고, 성심성의로 학업에 종사하여 학문과 기술을 배우고 익혀 교양을 높임으로써 장차 전문직업인으로서의 자질을 닦아야 한다.
- 제 42 조 (결석) <삭제(2025.2.3.)>
- 제 43 조 (포상) 총장은 품행이 방정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 또는 선행에 있어 타의 모범이 될만한 자에게 포상할 수 있다. 다만, 대상 및 운영절차에 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24.01.26.)
- 제 44 조 (징계) 총장은 학생 징계사유 발생 시 그 정상에 따라 근신·유기정학·무기정학 및 퇴학으로 징계처분할 수 있다. 다만, 대상 및 운영절차에 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24.01.26.)
1. <삭제(2024.1.26.)>
 2. <삭제(2024.1.26.)>
 3. <삭제(2024.1.26.)>
 4. <삭제(2024.1.26.)>
- ② <삭제(2024.1.26.)>

제 11 장 등록 및 수강신청

- 제 45 조 (등록) ① 학생은 매 학기 등록시기에 소정액의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 ② 실험 또는 실습에 사용되는 실제비용과 학생자치회비는 등록금과 같이 납부하여야 한다.
- ③ 납부한 등록금 중 대학등록금에관한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반환사유에 해당될 때에는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 ④ 등록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 제 46 조 (납입금의 면제) 총장은 품행이 방정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 및 국가원호대상 자녀에 대하여 납입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
- 제 46 조의 2 (수강신청) ① 학생은 소정기간 내에 수강할 교과목을 수강신청 하여야 한다.
- ② 수강신청한 교과목은 임의로 변경하지 못한다.
- ③ 수강신청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 제 46 조의 3 (등록금심의위원회 운영) ① 우리대학 등록금 책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등록금심의위원회를 두며,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9.02.27.)

- ② 등록금심의위원회는 기획실장·교무처장·학생지원처장·사무처장·예산감사팀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재학생 4인, 외부전문가 1인, 학부모 또는 동문 1인을 포함하여 11인 이내로 구성한다.(항신설 2022.04.08.)
- ③ 총장은 등록금심의위원회 위원 임기만료 30일 전까지 각 구성단위 대표에게 서면으로 등록금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을 의뢰하여야 하며, 각 구성단위는 추천을 의뢰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등록금심의위원회 위원을 추천하여야 한다. 또한, 위원이 임기 중 결원이 발생할 경우에 사유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이를 총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결원의 위원을 추천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기획실장으로 하며, 회무를 통리한다.(항신설 2022.04.08.)
- ④ 재학생·학부모 또는 동문 위원은 학생지원처 학생복지팀에서 추천한 자를, 외부전문가 위원은 사무처 총무회계팀에서 추천한 자를 총장이 위촉한다.(항신설 2022.04.08.)
- ⑤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항신설 2022.04.08.)
- ⑥ 등록금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항번호변경 2022.04.08.)

제 12 장 장 학 금

- 제 47 조 (장학금) ① 품행이 방정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하며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학생에 대하여는 장학위원회 심의를 거쳐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 ② 장학금지급규정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 13 장 교수회와 교무위원회

- 제 48 조 (교수회 구성 및 소집) ① 우리대학에 교수회를 두며 조교수 이상의 전임교원으로서 조직한다.(개정 2019.10.30.)
- ② 교수회는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으로서 개최한다.
- 제 48 조의 2 (교수회 심의) 교수회는 총장의 자문에 응하여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입학·진급·졸업에 관한 사항
 2. 시험 및 사정에 관한 사항
 3. 기타 총장이 부의하는 사항
- 제 48 조의 3 (교수회 운영) 교수회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 제 49 조 (교무위원회) ① 우리대학에 교육과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무위원회를 둔다.
- ② 교무위원회의 구성·심의·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 제 49 조의 2 (삭제)

제 49 조의 3 (삭제)

제 49 조의 4 (삭제)

제 14 장 대학평의위원회

제 49 조의 5 (대학평의위원회 구성) 우리대학에 대학평의위원회(이하 “평의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평의위원회는 대학의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총장이 위촉하는 13명의 평의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8.02.26.,2021.01.26)

제 49 조의 6 (평의위원회 소집) 평의위원회의 소집은 총장의 요청이 있을 때 및 평의원 과반수의 소집요구가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의장이 소집한다.

제 49 조의 7 (평의위원회 기능) ① 대학평의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경우 자문에 한한다.

1. 대학의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2.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3. 대학 헌장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4. 대학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대학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6. 개방이사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에 관한 사항
7. 그 밖의 교육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총장이 부의 하는 사항

제 49 조의 8 (평의위원회 운영) 평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 15 장 직 제

제 50 조 (직제) ① 우리대학 직제에 관한 사항은 직제규정에 의한다.

제 50 조의 2 (삭제)

제 51 조 (삭제)

제 16 장 부속기관

제 52 조 (삭제 2016. 9. 2)

제 52조(학술정보원) 우리대학에 학술정보원(도서관)을 두며, 학술정보원(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신설 2018.2.5)(개정 2018.08.27)

제 52 조의 2 (삭제 2016. 9. 2)

제 52 조의 3 (삭제 2016. 9. 2)

제 52 조의 4 (삭제 2016. 9. 2)

제 52 조의 5 (학교기업 설치) ①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의해 우리대학에 학교기업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학교기업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개정 2016.12.28.,2024.8.6)

② <삭제(2024.8.6.)>

③ <삭제(2024.8.6.)>

제52조의6(학교기업의 현장실습 활용) <삭제(2024.8.6.)>

제52조의7 (학교기업의 보상금 지급기준) <삭제(2024.8.6.)>

제 17 장 학칙 제·개정 절차

제 53 조 (학칙 제정 및 개정의 예고) 학칙을 제·개정을 할 경우에는 제·개정안의 취지, 주요내용 또는 전문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 54 조 (공고기간) 학칙 제·개정안의 공고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7일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23.03.31.)

제 55 조 (의견제출 및 처리) ① 우리대학의 교직원 및 학생은 공고된 제·개정안에 대하여 그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개정 2021.09.27.)

② 당해 제·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제출된 경우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그 제출된 의견의 처리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 56 조 (심의) 사전예고 절차를 거친 제·개정안은 학칙에 의거 교무위원회 및 대학평의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 57 조 (공포절차 및 공포) 제반 학칙의 공포는 교무위원회 및 대학평의원회의 심의를 마친 후,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총장이 공포한다.(개정 2016. 9. 2.)

제 57 조의 2 (자체평가 실시) ① 총장은 고등교육법 제11조제2항 및 고등교육기관의 자체평가에 관한 규칙에 따라 대학의 교육·연구, 조직·운영, 시설·설비 등에 관한 사항을 점검 및 평가를 통해 대학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자체평가를 실시한다.

② 제1항에 근거하여 자체평가는 격년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그 결과를 공개한다.

③ 자체평가 조직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 18 장 보 칙

제 58 조 (시행세칙) 이 학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무위원회 및 대학평의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 59 조 (산업체 위탁교육) ① 고등학교 졸업학력이 있는 자로서 산업체에 근무 중인 자의 교육을 산업체로부터 위탁받은 때에는 산업체와의 계약에 의한 위탁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교육 계약에는 위탁생의 선발기준, 위탁교육 경비의 부담 및 납부

명지전문대학 규정 / 2-1-1 학칙

방법, 교육과정의 편성·운영, 산업체의 시설 및 교수자격이 있는 자의 활용, 학교에 대한 산업체의 지원 등 위탁교육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산업체 위탁교육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위탁교육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학칙은 197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명지실업전문학교는 재학생(휴학자 포함, 이하 같다.)이 졸업할 때까지 존속한다. 다만, 휴학생이 복학할 수 있는 기간은 1983학년도까지로 한다.

③ (경과조치) 재학생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학칙은 198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8조, 제17조, 제22조 및 제24조는 198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재학생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이 학칙은 1983년 1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 제3항 및 제24조 제5항은 1984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학칙 1985년 1월 15일부터 시행한다.

② (졸업자격시험 합격자 처리) 1981학년도 이후 1987학년도 이전에 입학한 자 중 전문대학 전과정을 이수한 자 또는 이수예정자로서 졸업정원제에서 제외된 자가 전문대학 졸업자격시험에 합격한 때에는 제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 칙

이 학칙은 198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학칙은 1987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② (졸업정원 감축학과의 졸업정원 적용에 관한 특례) 졸업정원 감축학과는 제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다.

학 과 명	졸업정원	적용학년도		비 고
		부터	까지	
전 자 과	160	-	1986	
공 업 디자인과	120	-	1986	
	80	1987	1989	
공 업 경 영 과	120	1986	1989	
상 업 디자인과	80	1986	1989	
지역사회개발과	80	1986	-	
영 어 과	120	1987	1990	

부 칙

① (시행일) 이 학칙은 198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졸업정원을 입학정원으로 전환함에 따른 경과조치) 1981학년도부터 1987학년도 사이에 입학한 자 중 간호과, 어업과, 기관과, 항해과 및 수·해양계열 통신과의 학생이 1989학년도까지, 그 이외의 학생이 1988학년도까지 졸업하는 자에 대한 학생정원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4조, 제6조, 제16조, 제16조의 2, 제27조, 제28조, 제31조의 개정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 (학과의 개편 등에 따른 학생 소속 변경) 학과가 신설, 통합 또는 개편된 경우에는 종전의 학과에 소속된 재적생 중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1988학년도 말까지 졸업하지 못한 자는 신설·통합 또는 개편된 학과의 소속으로 본다.

부 칙

이 학칙은 198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학칙은 199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학칙은 199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학칙은 199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학칙은 199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학칙은 1993년 4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명지전문대학 규정 / 2-1-1 학칙

② (입학시기에 관한 특례) 제17조 제4항에 의거 허가를 받아 재입학하는 자 중에서 1993학년도 제1학기에 재입학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993년 4월 30일까지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부 칙

이 학칙은 1993년 8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학칙은 199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1993학년도 이전 입학생은 제22조 제1항 및 제2항, 제24조 제1항 및 제2항의 개정학칙에 불구하고 종전의 학칙을 적용한다. 다만, 휴학 후 복학하는 학생의 경우는 복학 당시의 교육과정을 적용한다.

부 칙

이 학칙은 199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학칙은 199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학칙은 1997년 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학칙은 199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학과명칭 변경 등에 따른 소속 변경) 이 학칙 시행 당시의 지역사회개발과 소속의 교원과 학생은 이 학칙에 의한 사회복지과의 교원 및 학생으로 본다.

부 칙

이 학칙은 1997년 6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학칙은 1997년 1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학칙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명지전문대학 규정 / 2-1-1 학칙

② (학과명칭 변경 등에 따른 소속 변경) 이 학칙 시행 당시의 체육과 소속의 교원과 학생은 이 학칙에 의한 사회체육과 교원 및 학생으로 본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학칙은 199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이 학칙 중 제24조 제3항은 1999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학칙은 1998년 1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이 학칙 중 제4조는 1999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학칙은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학과의 개편 등에 따른 소속 변경) 이 학칙 시행 당시 다음 표의 종전명칭 소속 교원 및 학생은 이 학칙에 의한 변경명칭과 소속 교원 및 학생으로 본다.

종전명칭	변경명칭
공업경영과	산업시스템경영과
전자계산과	컴퓨터과
지 적 과	지적정보과
행 정 과	행정정보과
부동산과	부동산경영과
공업디자인과	산업정보디자인과
공 예 과	공예디자인과
시각디자인과	커뮤니케이션디자인과

- ③ (교과이수단위 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이 학칙 중 제24조 제2항은 2000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하되, 1999학년도 이전 입학자 중 휴학 후 복학하는 자의 경우는 복학 당시 교과과정을 적용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학칙은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이 학칙 중 제4조는 2001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학칙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이 학칙 중 제31조의 2는 2002년 2월 21일부터 적용하며 제52조의 4는 2001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 ③ (수업연한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2년제 과정이 3년제 과정으로 변경되었을 경우 2년제

명지전문대학 규정 / 2-1-1 학칙

과정으로 입학한 재학생·복학생 및 재입학자의 신분·학위취득 등 학사운영에 대하여는 종전의 학칙에 의한다. 단, 재입학자 중 1학년 1학기로 입학한 자는 재입학 당시의 학칙을 적용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학칙은 2002년 11월 4일부터 시행한다.
- ② (학과명칭변경에 따른 소속변경) 이 학칙 시행당시의 다음표의 종전명칭 소속교원 및 학생은 이 학칙에 변경명칭과 소속교원으로 본다.

종 전 명 칭	변 경 명 칭
컴퓨터과	컴퓨터정보과
전 자 과	정보미디어과

- ③ (수업연한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2년제 과정이 3년제 과정으로 변경되었을 경우 2년제 과정으로 입학한 재학생의 신분·학위취득 등 학사운영에 대하여는 종전의 학칙에 의하고 복학생 및 재입학생의 경우 본인의 선택에 의하여 2년제 또는 3년제 과정으로 한다. 단, 재입학자 중 1학년 1학기로 입학한 자는 재입학 당시의 학칙을 적용한다.

부 칙

이 학칙은 200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학칙은 200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학칙은 2003년 1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이 학칙 중 제4조는 2004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 ③ (학과명칭변경에 따른 소속변경) 이 학칙 시행당시의 다음표의 종전명칭 소속교원 및 학생은 변경명칭의 소속교원 및 학생으로 본다.

종 전 명 칭	변 경 명 칭
기계설계과	산업시스템설계과

부 칙

이 학칙은 2004년 3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학칙은 2004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명지전문대학 규정 / 2-1-1 학칙

부 칙

- ① 이 학칙은 2004년 11월 8일부터 시행한다.
- ② (산업체위탁교육생 수업연한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3년제과정에서 2년제과정으로 변경된 경우 3년제과정에 입학한 재학생의 신분·학위 취득 등 학사운영에 대하여 종전학칙에 의하고, 복학 및 재입학하는 자의 경우 본인의 선택에 의하여 2년제 또는 3년제 과정으로 한다. 단, 1학년 1학기 복학 및 재입학하는 자는 당시 학칙을 적용한다.

부 칙

이 학칙은 2004년 12월 6일 시행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학칙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학과명칭변경에 따른 소속변경) 이 학칙 시행당시의 다음표의 종전명칭 소속교원 및 학생은 변경명칭의 소속교원 및 학생으로 본다.

종 전 명 칭	변 경 명 칭
정보미디어과	컴퓨터전자과

- ③ (졸업인증제 시행에 따른 경과조치) 2004학년도 이전 입학자는 제31조 3의 개정학칙에 불구하고 종전의 학칙을 적용한다. 다만, 2005학년도 이후 1학년 1학기로 복학하는 경우에는 복학당시의 교과과정을 적용한다.

부 칙

이 학칙은 2005년 5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학칙은 2005년 6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학칙은 2005년 10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학칙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학과명칭변경에 따른 소속변경) 이 학칙 시행당시의 다음표의 종전명칭 소속교원 및 학생은 변경명칭의 소속교원 및 학생으로 본다.

종 전 명 칭	변 경 명 칭
사회교육과	청소년교육복지과

명지전문대학 규정 / 2-1-1 학칙

③ (경과조치) 2005학년도 이전 입학생은 개정학칙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학칙을 적용한다. 다만, 휴학 후 복학하는 학생의 경우는 복학 당시의 교육과정을 적용한다.

부 칙

이 학칙은 200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학칙은 200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전문학사학위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일 이전의 졸업자 및 사회교육과 소속 학생에 대하여 제31조의 개정학칙에 불구하고 종전의 학칙을 적용한다.

부 칙

이 학칙은 2007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학칙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학칙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학칙은 2007년 11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학칙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4조 및 제31조는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학과명칭변경에 따른 소속 및 학위종별 변경) 이 학칙 시행당시 종전명칭 소속 학생은 변경명칭의 소속 학생으로 본다. 단, 시행일 이전 지적정보과 입학자 중 2009년 8월 31일 이전 졸업자에 대하여는 종전학칙을 적용한다.

종 전 명 칭	변 경 명 칭
지적정보과	지적과
공예디자인과	패션텍스타일·세라믹과

부 칙

이 학칙은 2008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학칙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학칙은 200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4조 및 제31조는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학과명칭변경에 따른 소속 및 학위종별 변경) 이 학칙 시행당시 종전명칭 소속 학생은 변경명칭의 소속 학생으로 본다. 단, 시행일 이전 문예창작과 입학자 중 2010년 8월 31일 이전 졸업자에 대하여는 종전학칙을 적용한다.

종 전 명 칭	변 경 명 칭
산업시스템설계과	기계과

부 칙

이 학칙은 2008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23조의 2 및 제23조의 8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학칙은 2009년 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2조의2 제1항제2호 개정규정은 2010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평생교육원의 존속기간) 제52조의2 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평생교육원의 존속기간은 2010년 7월 31일까지로 한다.

③ (다른 규정의 폐지) 다음 각호의 규정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다만, 평생교육원의 존속기간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1. 평생교육원규정

2. 평생교육원운영위원회규정

④ (평생교육원 운영에 따른 경과조치) 평생교육원 운영은 제52조의2 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0년 7월 31일까지로 한다.

⑤ (다른 규정의 개정) <1> 학사내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②·⑤, 제15조①·②, 제17조5호, 제21조의2②, 제23조③, 제31조②·⑥, [별표1] 중 “학장”을 각각 “총장”으로 한다.

<2> 위원회설치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②, 제4조②·④, 제6조, 제8조 중 “학장”을 각각 “총장”으로 한다.

<3> 교수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조①, 제4조①, 제5조① 중 “학장”을 각각 “총장”으로 한다.

<4> 교무위원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①·②, 제3조①, 제6조 중 “학장”을 각각 “총장”으로 한다.

<5> 교원인사위원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2조①, 제3조①, 제5조①, 제6조①, 제8조② 중 “학장”을 각각 “총장”으로 한다.

<6> 교과과정위원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4조④ 중 “학장”을 각각 “총장”으로 한다.

<7> 산학협동위원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③, 제3조의1②, 제3조의2①·②, 제4조①, 제7조 중 “학장”을 각각 “총장”으로 한다.

<8> 시설위원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①, 제4조①, 제6조 중 “학장”을 각각 “총장”으로 한다.

<9> 평생교육원운영위원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①·② 중 “학장”을 각각 “총장”으로 한다.

<10> 정년보장교원임용심사위원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①, 제4조①, 제5조, 제12조 중 “학장”을 각각 “총장”으로 한다.

<11> 취업활성화위원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3호, 제3조①, 제5조② 중 “학장”을 각각 “총장”으로 한다.

<12> 정보화추진위원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①, 제4조③, 제5조, 제6조5호, 제8조 중 “학장”을 각각 “총장”으로 한다.

<13> 대학평의원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7호, 제3조①, 제4조1호·2호·3호·4호·5호, 제6조③·④, 제7조1호, 제10조①, 제12조, 14조 중 “학장”을 각각 “총장”으로 한다.

<14> 전공심화과정운영위원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②·③ 중 “학장”을 각각 “총장”으로 한다.

<15> 전공심화과정교육과정편성위원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③, 제8조 중 “학장”을 각각 “총장”으로 한다.

<16> 교원양성위원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①, 제5조①·③, 제6조① 중 “학장”을 각각 “총장”으로 한다.

<17> 규정류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②, 제5조③, 제9조② 중 “학장”을 각각 “총장”으로 한다.

<18> 위임전결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전결사항) 중 “교육인적자원부”를 “관할청”으로 하고, 제5조, 별지(전결사항) 중 “학장”을 각각 “총장”으로 한다.

<19> 사무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15조①·②, 제17조①, 제18조①, 제21조, 제24조③, 제28조①, 제30조①·② 중 “학장”을 각각 “총장”으로 한다.

<20> 사무관리규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4호, 제8조②, 제17조②, 제21조②·④·⑥, 제33조, 제36조①, 제38조②, 제41조, 제42조, 제44조①, 제46조, 제51조, 제52조 중 “학장”을 각각 “총장”으로 한다.

<21> 공문서분류및보존에관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조기호표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관할청장”으로 하고, 제7조, 제8조, 별책(조기호표, 소분류및단위업무별보존기간) 중 “학장”을 각각 “총장”으로 한다.

<22> 정보통신망운영에관한내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학장”을 각각 “총장”으로 한다.

<23> 교원인사에관한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②, 제6조의2①, 제9조의3③, 제11조, 제11조2호·3호, 제11조의2의6호, 제12조①, 제16조, 제16조1호·3호, 제20조②·③·④, 제21조, 제22조②, 제23조①, 별표2 중 “학장”을 각각 “총장”으로 한다.

<24> 비전임교원임용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①, 제6조③·④, 제7조②, 제8조2 중 “학장”을 각각 “총장”으로 한다.

<25> 외국인교원인사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①, 제7조① 중 “학장”을 각각 “총장”으로 한다.

<26> 조교인사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2, 제6조①, 제8조① 중 “학장”을 각각 “총장”으로 한다.

<27> 외래강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③, 제6조3호, 제8조, 제12② 중 “학장”을 각각 “총장”으로 한다.

<28> 교수업적평가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②·③·④·⑤, 제18조, 별표3 중 “학장”을 각각 “총장”으로 한다.

<29> 교원산업체연수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4호, 제8조①·②, 제10조, 제13조, 별지1(산업체 연수승낙서) 중 “학장”을 각각 “총장”으로 한다.

<30> 강의교수임용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②, 제8조①, 제8조의2①·②, 제11조 중 “학장”을 각각 “총장”으로 한다.

<31> 우수교원선정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7조②, 제8조 중 “학장”을 각각 “총장”으로 한다.

<32> 교원검소속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3조3호, 4조①, 제7조 중 “학장”을 각각 “총장”으로 한다.

<33> 교직원복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①·③, 제8조②, 제9조①, 제16조① 중 “학장”을 각각 “총장”으로 한다.

<34> 당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①, 제4조②, 제6조②, 제7조 중 “학장”을 각각 “총장”으로 한다.

<35> 교원국외여행에관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③, 제5조①·④, 제8조②, 제9조, 제14조4호, 별지 제3호 중 “학장”을 각각 “총장”으로 한다.

<36> 교원교비국외파견에관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②, 제11조, 제12조, 제13조①·②, 제15조①·②, 제18조①, 제20조, 제21조 중 “학장”을 각각 “총장”으로 한다.

<37> 교수안식연구년제에관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③ 중 “교육인적자원부”를 “관할청”으로 하고, 제6조②, 제7조②, 제8조③, 제8조2②, 제9조, 별지 제1호·제3호·제5호·제6호·제8호 중 “학장”을 각각 “총장”으로 한다.

<38> 성희롱예방및처리에관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6조①·③, 제9조①, 제10조①·②, 제11조①·②·③, 제14조①·② 중 “학장”을 각각 “총장”으로 한다.

<39> 교직원보수규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1조②, 제14조②, 제15조②, 제16조②, 제17조②, 제18조, 제20조①·②, 제22조 중 “학장”을 각각 “총장”으로 한다.

<40> 연구비지급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①·②, 제11조②, 별지 제2호·3호·4호 서식 중 “학장”을 각각 “총장”으로 한다.

<41> 연구보조비지급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8조 중 “학장”을 각각 “총장”으로 한다.

<42> 학생지도비지급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3호, 제4조, 제9조 중 “학장”을 각각 “총장”으로 한다.

<43> 업무추진비지급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9조 중 “학장”을 각각 “총장”으로 한다.

<44> 업무추진비(판공비)지급에관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1호·3호 중 “학장”을 각각 “총장”으로 한다.

<45> 업무교통비지급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7조 중 “학장”을 각각 “총장”으로 한다.

<46> 교직원여비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6조①, 제8조② 중 “학장”을 각각 “총장”으로 한다.

<47> 검수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2호 중 “학장”을 각각 “총장”으로 한다.

<48> 물품구매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②, 제4조①, 제7조② 중 “학장”을 각각 “총장”으로 한다.

<49> 비품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②, 제6조②, 제7조② 중 “학장”을 각각 “총장”으로 한다.

<50> 시설대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학장”을 각각 “총장”으로 한다.

<51> 불용품처분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별지 제1호 서식 중 “학장”을 각각 “총장”으로 한다.

<52> 게스트룸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5조②, 제7조 중 “학장”을 각각 “총장”으로 한다.

<53> 차량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①, 제5조① 중 “학장”을 각각 “총장”으로 한다.

<54> 전공심화과정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10호, 제14조②, 제20조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관할청장”으로 하고, 제3조②, 제6조, 제7조②, 제9조, 제13조②, 제16조②, 제19조, 제20조, 제21조①, 제24조②, 제28조②, 제30조, 제35조①, 제37조 중 “학장”을 각각 “총장”으로 한다.

<55> 시간제등록생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9조③ 중 “학장”을 각각 “총장”으로 한다.

<56> 산업체취탁교육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9호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관할청장”으로, 제5조①, 제9조 중 “교육인적자원부”를 “관할청”으로 하고, 제3조, 제8조② 중 “학장”을 각각 “총장”으로 한다.

<57> 명예학위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3호, 제7조 중 “학장”을 각각 “총장”으로 한다.

<58> 원격강좌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②, 제3조4호, 제11조② 중 “학장”을 각각 “총장”으로 한다.

<59> 실험실습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①, 제5조, 제8조, 제15조②, 제16조, 제16조3호, 제23조, 별지 제1호·2호·3호·5호 서식 중 “학장”을 각각 “총장”으로 한다.

<60> 전공스터디그룹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별지 제1호 중 “학장”을 각각 “총장”으로 한다.

<61> 기술지도대학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14조② 중 “학장”을 각각 “총장”으로 한다.

<62> 산·학·연컨소시엄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②, 제9조 중 “학장”을 각각 “총장”으로 한다.

<63> 학점은행제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②, 별지 제1호 중 “교육인적자원부”를 “관할청”으로 하고, 제4조, 제19조①·③, 제22조, 별지 제1호 서식 중 “학장”을 각각 “총장”으로 한다.

<64> 졸업인증제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② 중 “학장”을 각각 “총장”으로 한다.

<65> 계약에의한학과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②, 제10조④, 제13조 중 “학장”을 각각 “총장”으로 한다.

<66> 전과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②, 제3조①, 제5조②, 제6조 중 “학장”을 각각 “총장”으로 한다.

<67> 협약에의한학과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9조④, 제12조 중 “학장”을 각각 “총장”으로 한다.

<68> 연구윤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②, 제23조①, 제24조①·② 중 “학장”을 각각 “총장”으로 한다.

<69> 장학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5조①, 제6조②, 제7조, 제8조1호·2호, 제9조②, 제12조1호, 제16조7호, 제17조, 별표1 중 “학장”을 각각 “총장”으로 한다.

<70> 학생상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②, 제3조②, 제5조, 제8조②, 제12조5호, 제13조, 제13조⑥, 제15조①·② 중 “학장”을 각각 “총장”으로 한다.

<71> 학생준칙내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①, 제8조 중 “학장”을 각각 “총장”으로 한다.

<72> 학생국외유학및연수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②, 제3조①·② 중 “학장”을 각각 “총장”으로 한다.

<73> 외국인특별장학생선발및장학금지급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 중 “학장”을 각각 “총장”으로 한다.

<74> 장애학생지원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②, 제9조②, 제10조③, 제13조②, 제16조 중 “학장”을 각각 “총장”으로 한다.

<75> 도서관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②, 제7조4호, 제11조, 제13조②, 제26조 중 “학장”을 각각 “총장”으로 한다.

<76> 학보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9조1호·2호, 제11조 중 “학장”을 각각 “총장”으로 한다.

<77> 방송국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②, 제7조①·②, 제8조, 제10조 중 “학장”을 각각 “총장”으로 한다.

<78> 정보관리센터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②, 제6조 중 “학장”을 각각 “총장”으로 한다.

<79> 정보관리센터운영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학장”을 각각 “총장”으로 한다.

<80> 영문학보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8조1호·2호, 제10조 중 “학장”을 각각 “총장”으로 한다.

<81> 취업마케팅실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12호, 제6조1호·2호 중 “학장”을 각각 “총장”으로 한다.

<82> 박물관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②, 제13조5호, 제15조② 중 “학장”을 각각 “총장”으로 한다.

<83> 국제교류센터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②, 제7조3호, 제8조 중 “학장”을 각각 “총장”으로 한다.

<84> 교수학습개발원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②, 제6조①, 제9조 중 “학장”을 각각 “총장”으로 한다.

<85> 산업기술연구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②, 제7조①, 제8조②, 제11조1호·2호, 제14조 중 “학장”을 각각 “총장”으로 한다.

<86> 정보기술연구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②, 제7조①, 제8조②, 제11조1호·2호, 제14조 중 “학장”을 각각 “총장”으로 한다.

<87> 사회경영연구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②, 제6조②, 제7조①, 제8조②, 제9조②, 제10조1호·2호 중 “학장”을 각각 “총장”으로 한다.

<88> 인문사회연구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②, 제6조②, 제7조①, 제8조②, 제9조②, 제11조1호·2호, 제14조 중 “학장”을 각각 “총장”으로 한다.

<89> 교육문제연구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②·③·④·⑤, 제8조② 중 “학장”을 각각 “총장”으로 한다.

<90> 산업디자인연구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①, 제7조②, 제8조②, 제10조1호·2호, 제13조 중 “학장”을 각각 “총장”으로 한다.

<91> 예·체능연구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②, 제7조①, 제8조②, 제11조1호·2호, 제14조 중 “학장”을 각각 “총장”으로 한다.

<92> 평생교육원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1조 중 “교육인적자원부”를 “관할청”으로, 제14조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관할청장”으로 하고, 제6조②·③, 제21조, 별지 제2호 중 “학장”을 각각 “총장”으로 한다.

<93> 리눅스기술교육센터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②, 제5조②, 제7조 중 “학장”을 각각 “총장”으로 한다.

<94> 포털디자인산학기술지원센터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②, 제5조②, 제7조 중 “학장”을 각각 “총장”으로 한다.

<95> 학생생활상담센터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②·③, 제5조②, 제7조 중 “학장”을 각각 “총장”으로 한다.

<96> 외국어센터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②, 제7조 중 “학장”을 각각 “총장”으로 한다.

<97> 엑스포문화센터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②, 제8조 중 “학장”을 각각 “총장”으로 한다.

<98> KXUP트레이닝센터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②, 제5조②, 제7조 중 “학장”을 각각 “총장”으로 한다.

<99> 산학협력단정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①, 제26조④, 제27조③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관할청장”으로 하고, 제5조, 제8조①·③·④, 제9조②, 제10조①·②·③, 제11조②, 제12조②, 제17조, 제18조②, 제21조, 제22조①·③ 중 “학장”을 각각 “총장”으로 한다.

<100> 산학협력단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5조②, 제8조②, 제10조②, 제12조①, 제14조②, 제16조②, 제18조①, 제21조②, 제27조①·③, 제28조 중 “학장”을 각각 “총장”으로 한다.

<101> 학교기업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②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관할청장”으로 하고, 제6조①·③·④, 제7조③, 제8조②·③·④, 제11조③, 제18조②, 제22조①·③ 중 “학장”을 각각 “총장”으로 한다.

<102> 실험실습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3호·5호 서식 중 “학장”을 각각 “총장”으로 한다.

부 칙

이 학칙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학칙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학과명칭변경에 따른 소속 변경) 이 학칙 시행당시 종전명칭 소속 교원 및 학생은 변경명칭의 소속 교원 및 학생으로 본다.

종 전 명 칭	변 경 명 칭
행정정보과	행정과

부 칙

① (시행일) 이 학칙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23조의 6 및 제50조 ③항은 201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 (교과이수단위 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2009학년도 이전 입학생은 제22조 제1항, 제24조 제2항 및 제3항, 제25조 제1항의 학칙 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학칙을 적용한다. 다만, 2010학년도 이후 1학년 1학기인 복학하는 경우에는 복학당시의 교과과정을 적용한다.

③ (다른 규정의 개정) <1> 학사내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②항, ④항, 제14조 ②항, 제23조 ①항, 제25조 ①항 2호, 제31조 ②항의 “학적과”를 각각 “학적팀”으로 하고, 제28조 ①항의 “학생서비스과”를 각각 “학생서비스팀”으로 한다.

<2> 교수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②항 중 “계열부장”을 각각 “학부장”으로 한다.

<3> 교무위원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①항 중 “계열부장”을 각각 “학부장”으로 하고, 제8조의 “기획홍보과”를 각각 “기획홍보팀”으로, “기획홍보과장”을 각각 “기획홍보팀장”으로 한다.

<4> 교원인사위원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②항의 “교무과장”을 각각 “교무팀장”으로 한다.

<5> 산학협력위원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 “산학협력과”를 각각 “산학협력팀”으로 하고, “산학협력과장”을 각각 “산학협력팀장”으로 한다.

<6> 시설위원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①항 중 “계열부장”을 각각 “학부장”으로 하고, 제8조의 “기획홍보과장”을 각각 “기획홍보팀장”으로 한다.

<7> 평생교육원운영위원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②항의 “교학과장”을 각각 “교학팀장”으로 한다.

<8> 취업활성화위원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②항의 “취업마케팅과장”을 각각 “취업마케팅팀장”으로 한다.

<9> 정보화추진위원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 “정보관리센터과장”을 각각 “정보관리팀장”으로 한다.

<10> 대학평의원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1호 중 “계열”을 각각 “학부”로 하고, 제4조 1호의 “교무과”를 각각 “교무팀”으로, 2호의 “총무과”를 각각 “총무팀”으로, 3호 및 4호의 “학생과”를 각각 “학생팀”으로, 5호의 “기획홍보과”를 각각 “기획홍보팀”으로 한다.

<11> 교원양성위원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②항의 “학적과장”을 각각 “학적팀장”으로 한다.

<12> 평생교육본부운영위원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②항의 “팀(과)장”을 각각 “팀장”으로 한다.

<13> 사무분장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 “기획홍보과”를 각각 “기획홍보팀”으로, 제5조의 “예산감사과”를 각각 “예산감사팀”으로, 제6조의 “교무과”를 각각 “교무팀”으로, 제7조의 “학적과”를 각각 “학적팀”으로, 제7조의2의 “입학관리과”를 각각 “입학관리팀”으로, 제8조의 “산학협력과”를 각각 “산학협력팀”으로, 제9조의 “연구지원과”를 각각 “연구지원팀”으로, 제10조의 “학생과”를 각각 “학생팀”으로, 제11조의 “총무과”를 각각 “총무팀”으로, 제12조의 “회계과”를 각각 “회계팀”으로, 제12조의2의 “시설관리과”를 각각 “시설관리팀”으로, 제13조의 “학생서비스과”를 각각 “학생서비스팀”으로 한다.

<14> 위임전결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전결사항의 행정부서 각 “과”를 각각 “팀”으로 하고, “과장”을 각각 “팀장”으로 한다.

<15> 사무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2호의 “총무과”를 각각 “총무팀”으로 한다.

<16> 교원인사에관한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 5 ①항, ②항 중 “계열”을 각각 “학부”로, 제20조 ③항 중 “계열부장”을 각각 “학부장”으로 한다.

<17> 외래강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①항 3호 중 “예·체능계열”을 각각 “예술체육학부”로 한다.

<18> 교수업적평가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②항의 “교무과”를 각각 “교무팀”으로, <별표1> 산정기준 4), 6), 10)의 “학적과”를 각각 “학적팀”으로, <별표3>의 산정기준 8)의 “교무과”를 각각 “교무팀”으로 하고, <별표3>의 8) 중 “예·체능계열”을 각각 “예술체육학부”로, “디자인계열”을 각각 “디자인학부”로, 교수업적평가표 보고서, 별지 5~8, 종합평가서 양식의 “계열”을 각각 “학부”로 한다.

<19> 교원겸소속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②항의 “교무과”를 각각 “교무팀”으로 하고, [별표1]의 교원 겸소속 동의서 양식 중 “계열”을 각각 “학부”로 한다.

<20> 교직원복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①항의 “소속과장”을 각각 “소속팀장”으로 하고, 제21조 “과장”을 각각 “팀장”으로 한다.

<21> 당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13호 및 16호, 제9조 ②항의 “총무과”를 각각 “총무팀”으로 한다.

<22> 시간외근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①항의 “과장”을 각각 “팀장”으로 한다.

<23> 교원국외여행에관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 중 “계열부장”을 각각 “학부장”으로 한다.

<24> 교원교비국외파견에관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4호 중 “계열부장”을 각각 “학부장”으로 한다.

<25> 교수안식연구년제에관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②항, 제7조 ①항, 별지 제1호, 5호, 7호 중 “계열부장”을 각각 “학부장”으로 한다.

<26> 연구비지급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②항 중 “계열”을 각각 “학부”로 한다.

<27> 검수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①항 3호의 “산학협력과”를 각각 “산학협력팀”으로 한다.

<28> 불용품처분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①항의 “시설관리과”를 각각 “시설관리팀”으로 하고, [별지 제1호 서식]의 “과장”을 각각 “팀장”으로 한다.

<29> 게스트룸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및 제4조의 “총무과”를 각각 “총무팀”으로 한다.

<30> 차량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및 제5조 ①항, ②항, 제 6조 ④항, 제7조 ②항의 “총무과”를 각각 “총무팀”으로 하고, 제6조 ③항 및 제10조의 “총무과장”을 각각 “총무팀장”으로 한다.

<31> 명예학위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②항 중 “계열부장”을 각각 “학부장”으로 한다.

<32> 실험실습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③항의 “산학협력과”를 각각 “산학협력팀”으로 한다.

<33> 현장실습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3호 서식]의 “산학협력과”를 각각 “산학협력팀”으로 한다.

<34> 전공스터디그룹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②항 및 제3조 ④항, 제5조 ③항의 “학적과”를 각각 “학적팀”으로 한다.

<35> 학점은행제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 ②항의 “학적과”를 각각 “학적팀”으로 한다.

<36> 졸업인증제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⑤항의 “학적과”를 각각 “학적팀”으로 하고, 제6조 ②항 중 “정보공학계열부장”을 각각 “정보공학부장”으로 한다.

<37> 전과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②항, ③항 1호, 4호, 5호, 6호, 7호의 “학적과”를 각각 “학적팀”으로 하고, 제4조 ④항 중 “디자인계열”을 각각 “디자인학부”로, “예·체능계열”을 각각 “예술체육학부”로, “동일계열”을 각각 “동일학부”로 한다.

<38> 연구윤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 “연구지원과”를 각각 “연구지원팀”으로, “과장”을 각각 “팀장”으로 하고, 제12조 ①항 및 제13조 ③항, 제25조 ①항의 “연구지원과”를 각각 “연구지원팀”으로 한다.

<39> 학생상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③항의 “학생과장”을 각각 “학생팀장”으로 하고, 제9조 ①항의 “학적과”를 각각 “학적팀”으로 한다.

<40> 장애학생지원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①항의 “학생과”를 각각 “학생팀”으로 하고, 제17조 ①항의 “학생과장”을 각각 “학생팀장”으로 한다.

<41> 도서관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 “수서과”를 각각 “수서팀”으로, “열람과”를 각각 “열람팀”으로 하고, 제6조 ④항의

“수서과장”을 각각 “수서팀장”으로 한다.

<42> 정보관리센터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③항 “정보관리과”를 각각 “정보관리팀”으로 하고, “과장”을 각각 “팀장”으로 한다.

<43> 취업마케팅실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①항의 “취업마케팅과”를 각각 “취업마케팅팀”으로 하고, “과장”을 각각 “팀장”으로 한다.

<44> 국제교류센터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②항의 “국제교류과”를 각각 “국제교류팀”으로 하고, “과장”을 각각 “팀장”으로 한다.

<45> 교수학습개발원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②항의 “교수학습개발과”를 각각 “교수학습개발팀”으로 하고, “과장”을 각각 “팀장”으로 한다.

<46> 평생교육원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①항의 “과장”을 각각 “팀장”으로 한다.

<47> 평생교육본부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①항 및 제11조 ②항의 “팀(과)장”을 각각 “팀장”으로 하고, 제24조 ②항의 “회계과”를 각각 “회계팀”으로 한다.

<48> 산학협력단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 8호의 “산학협력과”를 각각 “산학협력팀”으로 한다.

<49> 산학협력단취업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 “산학협력과”를 각각 “산학협력팀”으로 하고, “과장”을 각각 “팀장”으로 하며, 제38조 ②항 2호 및 제55조 ③항의 “산학협력과장”을 각각 “산학협력팀장”으로 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학칙은 201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23조의8은 2010년 8월 20일부터 적용하고, 제4조 및 제31조는 2011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 (학과명칭 및 학위종별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당시 종전명칭 소속 학생은 변경명칭의 소속 학생으로 본다. 단, 시행일 이전 지적과 입학자 중 2012년 8월 31일 이전 졸업자는 종전 전문학위를 적용하고 시행일 이전 산업정보디자인과 입학자 중 2013년 8월 31일 이전 졸업자 및 뷰티아트디자인과 입학자 중 2012년 2월 28일 이전 졸업자는 종전 학칙을 적용한다.

구 분	종 전 명 칭	변 경 명 칭
본 과	산업정보디자인과	산업디자인과
계약학과	뷰티아트디자인과	뷰티아트과

부 칙

이 학칙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8 및 제24조는 2011년 3월 1일부터 시

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학칙은 2011년 9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4조 및 제50조의2는 2012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 (학위종별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당시 지적과의 입학자중 2012년 9월 1일 이후 졸업자는 공업전문학사를 수여함에도 불구하고 지적전문학사를 수여한다.

부 칙

이 학칙은 2012년 2월 6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23조, 제23조의2, 제23조의8, 제23조의15는 2012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학칙은 2012년 06월 04일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규정의 개정) <1> 교수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② 중 “과반수 이상”을 각각 “과반수”로 한다.

<2> 교무위원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과반수 이상”을 각각 “과반수”로 한다.

<3> 교원인사위원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② 중 “과반수 이상”을 각각 “과반수”로 한다.

<4> 정보화추진위원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과반수 이상”을 각각 “과반수”로 한다.

<5> 대학평의원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2호 중 “과반수 이상”을 각각 “과반수”로 한다.

<6> 평생교육본부운영위원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과반수 이상”을 각각 “과반수”로 한다.

<7> 교수업적평가위원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② 중 “과반수 이상”을 각각 “과반수”로 한다.

<8> 연구윤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② 중 “과반수 이상”을 각각 “과반수”로 한다.

<9> 학보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과반수 이상”을 각각 “과반수”로 한다.

<10> 방송국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과반수 이상”을 각각 “과반수”로 한다.

<11> 영문학보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과반수 이상”을 각각 “과반수”로 한다.

<12> 산학협력단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②, 제12조②, 제17조②, 제18조② 중 “과반수 이상”을 각각 “과반수”로 한다.

<13> 가족회사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② 중 “과반수 이상”을 각각 “과반수”로 한다.

부 칙

이 학칙은 2012년 08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학칙은 2012년 12월 3일부터 시행하되, 제23조의2 ③항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학칙은 2013년 3월 4일부터 시행한다.

② (교과이수단위 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2009학년도 이전 입학생은 제22조 제1항, 제24조 제2항 및 제3항의 학칙 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학칙을 적용한다.

부 칙

이 학칙은 2013년 7월 1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학칙은 2013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4조는 2014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 (피부미용과 폐과에 따른 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 당시 피부미용과 재적생은 뷰티아트과 소속으로 통합한다. 단, 시행일 이전 피부미용과 입학자 중 2015년 8월 31일 이전 졸업자는 종전 학칙을 적용한다.

부 칙

이 학칙은 2013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학칙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학칙은 2014년 6월 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는 2015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학칙은 2014년 8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이 학칙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교과이수 관련 경과조치 조정) 제24조 제2항 내지 제3항 및 제25조 제1항 내지 제2항과 관련하여, 2015학년도 이후 1학년 1학기 복학생은 입학당시 교육과정 적용을 원칙으로 한다.

부 칙

이 학칙은 2015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학칙은 2015년 12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5.12.03. 부칙 개정>

이 학칙은 2015년 12월 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2조의 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학칙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23조의12 제3항은 2016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학칙은 2016년 5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학칙은 2016년 9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4조(설치학과 및 입학정원), 제23조의 2(전공심화과정 운영) 제3항 및 제23조의 15(시간제등록) 제3항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학과명칭 및 학위종별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당시 종전명칭 소속 학생은 변경명칭의 소속 학생으로 본다. 단, 시행일 이전 중국어과, 뷰티아트과, 음악과 입학자 중 2018년 8월 31일 이전 졸업자 및 컴퓨터전자과, 컴퓨터정보과, 정보통신과, 유아교육과, 연극영상과 입학자 중 2019년 8월 31일 이전 졸업자는 종전 학칙을 적용한다. 또한 시행일 이전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의 컴퓨터전자공학과, 컴퓨터정보공학과 입학자 중 2017년 8월 31일 이전 졸업

자는 종전 학칙을 적용한다.

구분	변경전	변경후
본과 / 시간제 등록생	중국어과	중국비즈니스과
	뷰티아트과	뷰티매니지먼트과
	음악과	클래식공연예술과
	컴퓨터전자과	전자공학과
	컴퓨터정보과	컴퓨터공학과
	정보통신과	정보통신공학과
	연극영상과	연극영상학과
학사학위전공심화과정	컴퓨터전자공학과	전자공학과
	컴퓨터정보공학과	컴퓨터공학과

부 칙

이 학칙은 2016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제23조의5제2항)

부 칙

이 학칙은 2016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제26조제1항, 제52조의5제1항·제2항)

부 칙

이 학칙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3조의2제3항, 제23조의6제3항, 제23조의8제1항, 제23조의15제3항)

부 칙

이 학칙은 2017년 6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학칙은 2018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4조(설치학과 및 입학정원), 제23조의 2(전공심화과정 운영) 제3항, 제23조의 8(계약학과 정원) 및 제23조의 15(시간제등록) 제3항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학과명칭 및 학위종별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당시 종전명칭 소속 학생은 변경명칭의 소속 학생으로 본다. 단, 시행일 이전 산업시스템경영과 입학자 중 2019년 8월 31일 이전 졸업자 및 유아교육과 입학자 중 2020년 8월 31일 이전 졸업자는 종전 학칙을 적용한다. 또한 시행일 이전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의 산업시스템경영공학과, 중국비즈니스학과 입학자 중 2019년 8월 31일 이전 졸업자는 종전 학칙을 적용한다.

명지전문대학 규정 / 2-1-1 학칙

구분	변경전	변경후
본과	산업시스템경영과	산업경영공학과
	유아교육과	유아교육학과
학사학위	산업시스템경영공학과	산업경영공학과
전공심화과정	중국어학과	중국비즈니스학과
시간제등록생	산업시스템경영과	산업경영공학과

부 칙

이 학칙은 2018년 8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25조의2는 2018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학칙은 2018년 1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4조(설치학과 및 입학정원), 제9조(수업일수), 제9조의2(집중이수제), 제23조의2(전공심화과정 운영)제3항, 제5항, 제23조의15(시간제등록)제3항, 제24조(교과이수단위)제2항 및 제25조의2(교수시간)제2항은 2019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 (학과명칭 및 학위종별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당시 종전명칭 소속 학생은 변경명칭의 소속 학생으로 본다. 단, 시행일 이전 기계과, 토목과, 경영과 입학자 중 2020년 8월 31일 이전 졸업자는 종전 학칙을 적용한다.

구분	변경전	변경후
본과/시간제등록생	기계과	기계공학과
	토목과	토목공학과
	경영과	경영학과

③ (전임교원 책임시수 조정에 따른 경과조치) 2019학년도 1학기부터 시행하되 2021학년도 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한다. 위 기간 중 책임시간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④ (교과이수단위 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2019학년도 이전 입학자는 종전의 학칙을 적용하되, 2019학년도 이전 입학자가 2019학년도 이후 복학하는 경우에는 복학당시의 교과과정을 적용한다.

부 칙

이 학칙은 2018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이 학칙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학칙 제24조(교과이수단위 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이 학칙 중 제24조 제4항은 201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하되, 2018학년도 이전 입학자 중 휴학 후 복학하는 자의 경우는 복학 당시 교과과정을 적용한다.

부 칙

이 학칙은 2019년 6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4조(설치학과 및 입학정원), 제23조의10(계약학과 정원) 제1항은 2020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학칙은 2019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학칙은 2019년 10월 30일부터 시행하며, 제48조제1항에 관한 사항은 2019학년도 2학기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학칙은 2019년 1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학칙은 2020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이 학칙은 2020년 4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4조(설치학과 및 입학정원)는 2021학년도부터 시행하며, 제23조의 2(전공심화과정 운영) 제3항은 2020학년도부터 시행한다.

② (학과명칭 및 학위종별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당시 종전명칭 소속 학생은 변경명칭의 소속 학생으로 본다. 단, 시행일 이전 전기과 입학자 중 2022년 8월 31일 이전 졸업자 및 인터넷응용보안공학과, 산업디자인과, 패션텍스타일·세라믹과 중 2023년 8월 31일 이전 졸업자는 종전 학칙을 적용한다.

구분	변경전	변경후
본과	전기과	전기공학과
	인터넷응용보안공학과	인터넷보안공학과
	산업디자인과	산업디자인학과
	패션텍스타일·세라믹과	패션·리빙디자인과

③ (학과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공연예술학부 클래식공연예술전공은 2022년 2월 28일자로 폐지하며, 이 시점(2022년 2월 28일) 이후에도 졸업하지 못한 소속 재적생은 종전 학칙을 적용한다. 단, 폐지된 학과의 소속 재적생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유사 학과의 전과를 허용하되 기 취득학점은 총장이 인정할 수 있다.

부 칙

명지전문대학 규정 / 2-1-1 학칙

이 학칙은 2020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25조의2(교수시간)제2항은 2020학년도 2학기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학칙은 2020년 9월 8일부터 시행하되, 2020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한다.

부 칙

① 이 학칙은 2021년 1월 26일로부터 시행하되, 2020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한다.

② (학과 개편 등에 따른 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당시 종전 학과 소속 재적생 중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2021학년도 말까지 졸업하지 못한 자는 개편된 학과의 소속으로 본다. 단, 종전 학과의 소속 재적생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유사 학과로의 전과를 허용하되 기 취득학점은 총장이 인정할 수 있다.

구분	개편전	개편후
본과	행정과	공공행정서비스상담과
	글로벌비즈니스학부	글로벌비즈니스학부
	영어비즈니스전공	항공서비스전공

③ (야간 학과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당시 종전 야간 학과 소속 재적생 중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2021학년도 말까지 졸업하지 못한 자는 종전 학칙을 적용한다. 단, 종전 학과의 소속 재적생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유사 학과로의 전과를 허용하되 기 취득학점은 총장이 인정할 수 있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학칙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전공심화과정 학과명칭 및 학위종별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당시 다음표의 종전명칭 소속 학생은 변경명칭의 소속 학생으로 본다. 단, 시행일 이전 입학자 중 2022년 8월 31일 이전 졸업자는 종전 학칙을 적용한다.

종 전 명 칭	변 경 명 칭
인터넷응용보안공학과	인터넷보안공학과
패션텍스타일·세라믹학과	패션·리빙디자인학과

부 칙<별표1 개정>

① (시행일) 이 학칙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학과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당시 종전명칭 소속 학생은 변경명칭의 소속 학생으로 본다. 단, 뷰티매니지먼트과 소속 재적생은 종전 학칙을 적용하되, 본인의 의사에 따라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4개 전공 중 1개의 전공으로 변경을 허용하고 기 취득학점은 총장이 인정할 수 있다.

명지전문대학 규정 / 2-1-1 학칙

종 전 명 칭	변 경 명 칭
글로벌비즈니스학부 항공서비스전공	항공서비스과
글로벌비즈니스학부 중국어비즈니스전공	중국어비즈니스과
글로벌비즈니스학부 일본어비즈니스전공	일본어과
청소년교육복지과	청소년교육상담과
공연예술학부 실용음악전공	실용음악과
공연예술학부 연극영상전공	연극영상학과
뷰티매니지먼트과	뷰티매니지먼트과 메이크업·네일전공
	뷰티매니지먼트과 뷰티스킨케어전공
	뷰티매니지먼트과 헤어디자인전공
	뷰티매니지먼트과 스타일디렉터전공

부 칙

이 학칙은 2021년 8월 19일부터 시행하되, 2021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학칙 제23조의2)

부 칙

이 학칙은 2021년 9월 27일로부터 시행하되, 2021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학칙 제22조의2, 제22조제4항제5항, 제27조제1항, 제3조, 제5조, 제55조)

부 칙

① (시행일) 이 학칙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23조의10(계약학과 정원), 제23조의11(계약학과 지원자격 및 선발)제1항제3호, 제23조의13(계약학과 교육과정 편성·운영 및 학기·수업일수)제3항, 제23조의14(계약학과 설치운영기간 및 재학생보호)제1항은 2021년 12월 2일부터 시행한다.

② (전공심화과정 학과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 당시 다음표의 종전명칭 소속 학생은 변경명칭의 소속 학생으로 본다. 단, 시행일 이전 입학자 중 2023년 8월 31일 이전 졸업자는 종전 학칙을 적용한다.

종 전 명 칭	변 경 명 칭
청소년교육복지학과	청소년교육상담학과

부 칙<별표1, 별표2 개정>

① (시행일) 이 학칙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23조의9, 제23조의10, 제23조의11제1호, 제23조의14제1항, 제24조제2항은 2022년 2월 23일부터 적용한다.

② (학위종별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 당시 다음 표의 종전명칭 소속 학생은 변경명칭의 소속 학생으로 본다.

명지전문대학 규정 / 2-1-1 학칙

구분	학과명	종 전 명 칭	변 경 명 칭
본과정	산업경영공학과	공업전문학사	공학전문학사
	기계공학과	공업전문학사	공학전문학사
	토목공학과	공업전문학사	공학전문학사
	전기공학과	공업전문학사	공학전문학사
	전자공학과	공업전문학사	공학전문학사
	컴퓨터공학과	공업전문학사	공학전문학사
	정보통신공학과	공업전문학사	공학전문학사
	인터넷보안공학과	공업전문학사	공학전문학사
	소프트웨어콘텐츠과	공업전문학사	공학전문학사
	드론정보공학과(드론정보과)	공업전문학사	공학전문학사
	청소년교육복지과	교육복지전문학사	교육전문학사
	뷰티매니지먼트과 메이크업 네일전공	예술전문학사	미용전문학사
	뷰티매니지먼트과 뷰티스킨케어전공	예술전문학사	미용전문학사
	뷰티매니지먼트과 헤어디자인전공	예술전문학사	미용전문학사
계약학과	뷰티스킨케어과	예술전문학사	미용전문학사
	뷰티아트과	예술전문학사	미용전문학사
	스마트건설공학과	공업전문학사	공학전문학사
	ICT융합공학과	공업전문학사	공학전문학사
	디지털콘텐츠융합과	공업전문학사	디자인전문학사

부 칙<별표1 개정>

- ① (시행일) 이 학칙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46조의3(등록금심의위원회 운영) 제2항 ~ 제6항은 2022년 4월 8일부터 시행한다.
- ② (학과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 당시 다음표의 종전명칭 소속 학생은 변경명칭의 소속 학생으로 본다. 단, 시행일 이전 입학자 중 2024년 2월 28일 이전 졸업자는 종전 학칙을 적용한다.

학과명		학위종별	
종 전 명 칭	변 경 명 칭	종 전 명 칭	변 경 명 칭
지적과	지적공간정보학과	지적전문학사	공학전문학사

부 칙<별표4 개정>

이 학칙은 2022년 8월 10일부터 시행한다.(제17조제9항, 제22조의2제1항제6호, 제23조의10, 제23조의16, 제31조제1항, 제31조제4항)

부 칙<별표5 개정>

- ① (시행일) 이 학칙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별표5 및 제27조제1항)
- ② (전공심화과정 학과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 당시 다음표의 종전명칭 소속 학생은 변경명칭의 소속 학생으로 본다. 단, 시행일 이전 입학자 중 2024년 2월 28일 이전 졸

업자는 종전 학칙을 적용한다.(제23조의2제3항)

종 전 명 칭	변 경 명 칭
지적과	지적공간정보학과
<신 설>	드론정보공학과

부 칙

① (시행일) 이 학칙은 2023년 1월 30일부터 시행한다(제16조의3, 제17조의2, 제27조제2항). 단, 제19조 및 제24조는 2023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하고(제19조제4항, 제24조제2항, 제24조제3항), [별표2]는 2022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 (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 당시 2022학년도 이전 입학한 재적생은 학칙 제19조제4항 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학칙을 적용하며, 휴학 후 복학하는 학생의 경우는 학칙 제24조 및 복학 당시의 교육과정을 적용한다.

부 칙

이 학칙은 2023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제4조[별표1], 제54조)

부 칙<별표2 개정>

① (시행일) 이 학칙은 2023년 6월 21일부터 시행한다.(별표2 계약학과)

② (계약학과 학과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 당시 다음표의 종전명칭 소속 학생은 변경명칭의 소속 학생으로 본다. 단, 시행일 이전 입학자 중 2025년 2월 28일 이전 졸업자는 종전 학칙을 적용한다.

종 전 명 칭	변 경 명 칭
ICT융합공학과	AI·빅데이터학과
뷰티아트과	헤어·메이크업과
<신 설>	스파·메디컬스킨케어과

부 칙

이 학칙은 2023년 8월 9일부터 시행한다(제37조). 단, 제23조의10 계약학과 정원 관련 별표2는 2024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학칙은 2023년 9월 26일부터 시행한다(제16조의2제2항). 단, 제23조의2 별표5는 2024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학칙은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6조제2항). 단, 재입학 및 전과의 존속기한 삭제

명지전문대학 규정 / 2-1-1 학칙

(제16조의3, 제17조의2)는 2023년 12월 13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학칙은 2024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제43조, 제44조)

부 칙<별표 1 개정>

① (시행일) 이 학칙은 202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별표1).

② (학과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당시 종전명칭 소속 학생은 변경명칭의 소속 학생으로 본다. 단, 시행일 이전 2년제 과정 입학자 중 2026년 8월 31일 이전 졸업자와 시행일 이전 3년제 과정 입학자 중 2027년 8월 31일 이전 졸업자는 종전 학칙을 적용한다.

종 전 명 칭	변 경 명 칭
소프트웨어콘텐츠과	AI게임소프트웨어학과
인터넷보안공학과	컴퓨터보안공학과
<신 설>	AI·SW융합학부 자유전공학과
공공행정서비스상담과	공공행정서비스과
<신 설>	경영·휴먼라이프학부 자유전공학과
뷰티매니지먼트과 뷰티스킨케어전공	뷰티매니지먼트과 스킨케어·메디컬코스메틱전공
뷰티매니지먼트과 스타일디렉터전공	뷰티매니지먼트과 방송스타일디렉터전공
<신 설>	자유전공학부 자유전공학과

③ (수업연한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2년제 과정이 3년제 과정으로 변경되었을 경우 혹은 3년제 과정이 2년제 과정으로 변경되었을 경우, 2년제 과정 혹은 3년제 과정으로 입학한 재학생의 신분·학위취득 등 학사운영에 대하여는 종전의 학칙에 의하고 복학생 및 재입학생의 경우 본인의 선택에 의하여 2년제 또는 3년제 과정으로 한다. 단, 1학년 1학기로 재입학 또는 복학한 자는 변경된 학칙을 적용한다.

학과명	종전 수업연한	변경 후 수업연한
소프트웨어콘텐츠과	2년	3년
드론정보공학과	3년	2년

부 칙

이 규정은 2024년 5월 7일부터 시행한다.(제35조, 제38조제2항, 제39조제1항·제2항·제3항, 제39조제3항제1호~제5호, 별표2)

부 칙

이 학칙은 2024년 8월 6일부터 시행한다.(제5조제1항, 제14조의2제3항제1호~제3호, 제14조의3제3항제3호, 제14조의4제1항, 제14조의4제3항제3호, 제17조제1항·제8항, 제21조제6호, 제22조의3, 제23조의2제1항·제7항, 제23조의6제1항제2호, 제23조의13제2항, 제23조의14제2항, 제31조제1항, 제32조의2, 제52조의5제1항~제3항, 제52조의6, 제52조의7, 별표3)

부 칙

- ① (시행일) 이 학칙은 202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별표5)
- ② (전공심화과정 학과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당시 다음표의 종전명칭 소속 학생은 변경명칭의 소속 학생으로 본다. 단, 시행일 이전 입학자 중 2026년 8월 31일 이전 졸업자는 종전 학칙을 적용한다.

종 전 명 칭	변 경 명 칭
인터넷보안공학과	컴퓨터보안공학과

부 칙

이 학칙은 2024년 12월 18일부터 시행한다.(제19조제1항·제4항·제7항)

부 칙

이 학칙은 2025년 2월 3일부터 시행한다.(제42조)

부 칙<별표 1 개정>

- ① (시행일) 이 학칙은 2025년 4월 1일부터 시행하되, 2026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별표1).
- ② (경과조치) 이 학칙 중 제22조의2제1항제3호, 제31조제5항은 202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③ (학과개편 등에 따른 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당시 종전명칭 소속 학생은 변경명칭의 소속 학생으로 본다.

종 전 명 칭	변 경 명 칭
AI·SW융합학부 자유전공학과	<폐 지>
경영·휴먼라이프학부 자유전공학과	<폐 지>
<신 설>	AI미디어디자인학과

부 칙<별표2 개정>

- ① (시행일) 이 학칙은 2025년 5월 30일부터 시행하되, 2026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 ② (계약학과 학과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 당시 다음표의 종전명칭 소속 학생은 변경명칭의 소속 학생으로 본다. 단, 시행일 이전 입학자 중 2027년 2월 28일 이전 졸업자는 종전 학칙을 적용한다.

종 전 명 칭	변 경 명 칭
스마트건설공학과	<폐 지>
<신 설>	AI융합서비스학과
디지털콘텐츠융합학과	AI콘텐츠융합과
뮤직콘텐츠기획과	AI뮤직콘텐츠기획과

명지전문대학 규정 / 2-1-1 학칙

부 칙

이 학칙은 2025년 8월 12일부터 시행하되, 2026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제17조제6항)

부 칙

이 학칙은 2025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제24조제13항)

부 칙<별표 5 개정>

① (시행일) 이 학칙은 2025년 12월 4일부터 시행하되(제23조의2제8항제2호, 제24조제12항), [별표5]는 2026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 (모집단위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 당시 폐지된 종전 모집단위 소속 재적생 중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2025학년도 말까지 졸업하지 못한 자는 종전 학칙을 적용한다. 단, 종전 모집단위 소속 재적생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전공심화과정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유사한 타 전공과정으로의 전과를 허용하되 기 취득학점은 총장이 인정할 수 있다.

종 전 명 칭	변 경 명 칭
<신설>	보건의료정보학과
<신설>	보건의료정보학과(요양보건관리전공)
소프트웨어콘텐츠학과	<폐지>

부 칙<별표 1 개정>

① (시행일) 이 학칙은 2026년 2월 12일부터 시행하되(제22조제2항, 제22조의2제1항제7호, 제22조의3제2항·제3항, 제24조제2항·제3항) 제22조의2제1항제7호, 제22조의3제2항·제3항, 제24조제2항·제3항은 2026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 (단서 개정) 학생설계전공 신설에 따라 학위종별은 '창의융합전문학사'로 학위를 수여한다.

종 전 단 서	변 경 단 서
※ 자유전공학부(학과)는 학과(전공) 배정 후 '졸업요건'에 따라 해당 학과의 '졸업자격' 부여 및 '학위'를 수여함	※ 자유전공학부(학과)는 학과(전공) 배정 후 '졸업요건'에 따라 해당 학과의 '졸업자격' 부여 및 '학위'를 수여함. 단, 학생설계전공의 경우 학위종별은 '창의융합전문학사'로 함.

명지전문대학 규정 / 2-1-1 학칙

부 칙<별표 1 개정, 별표 9 신설>

- ① (시행일) 이 학칙은 202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이 학칙 중 제23조의19, 제26조제2항, [별표9]는 2026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 ② (학과개편 등에 따른 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당시 종전명칭 소속 학생은 변경명칭의 소속 학생으로 본다. 단, 시행일 이전 2년제 과정(드론정보공학과, 부동산경영과, 패션·리빙디자인과, 커뮤니케이션디자인과) 입학자 중 2028년 8월 31일 이전 졸업자와 시행일 이전 3년제 과정(산업디자인학과, AI미디어디자인학과) 입학자 중 2029년 8월 31일 이전 졸업자는 종전 학칙을 적용한다.

종 전 명 칭	변 경 명 칭
스마트시스템공학부 드론정보공학과	스마트시스템공학부 AI드론공학과
경영·휴먼라이프학부 부동산경영과	경영·휴먼라이프학부 부동산학과
예술·건강학부 산업디자인학과	AI·디자인학부 산업디자인학과
예술·건강학부 패션·리빙디자인과	AI·디자인학부 패션·리빙디자인과
예술·건강학부 커뮤니케이션디자인과	AI·디자인학부 커뮤니케이션디자인과
예술·건강학부 AI미디어디자인학과	AI·디자인학부 AI미디어디자인학과

부 칙<별표2, 별표5 개정>

- ① (시행일) 이 학칙은 2026년 5월 20일부터 시행한다.
- ② ([별표2] 계약학과 학과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 당시 다음표의 종전명칭 소속 학생은 변경명칭의 소속 학생으로 본다. 단, 시행일 이전 입학자 중 2028년 2월 28일 이전 졸업자는 종전 학칙을 적용한다.

[별표2]

종 전 명 칭	변 경 명 칭
<신 설>	AI인프라학과
AI·빅데이터학과	AI빅데이터학과
스파·메디컬스킨 케어과	AI메디컬스킨· 스파과

[별표 5]

종 전 명 칭	변 경 명 칭
보건의료정보학과 (요양보건관리전공)	<삭제>

[별표 1] (제4조 설치학과 및 입학정원 관련)(개정 2016.9.2, 2018.2.5., 2018.11.12., 2019.06.19., 2020.04.16, 2021.05.12., 2022.02.23., 2022.04.08., 2023.03.31., 2024.04.05., 2025.3.31., 2026.2.12., 2026.3.30.)

설치학과 입학정원 및 학위종별(2027학년도)

학부명	학 과 명		수업 연한	입학정원			학 위 종 별
				주간	야간	계	
AI·SW 융합학 부	AI게임소프트웨어학과		3년	75		75	공학전문학사
	컴퓨터공학과		3년	100		100	공학전문학사
	컴퓨터보안공학과		3년	75		75	공학전문학사
	전자공학과		3년	95		95	공학전문학사
	정보통신공학과		3년	70		70	공학전문학사
스마트 시스템 공학부	기계공학과		2년	100		100	공학전문학사
	산업경영공학과		2년	90		90	공학전문학사
	전기공학과		2년	115		115	공학전문학사
	토목공학과		2년	95		95	공학전문학사
	지적공간정보학과		2년	50		50	공학전문학사
	AI드론공학과		2년	60		60	공학전문학사
경영· 휴먼라 이프학 부	경영학과		2년	105		105	경영전문학사
	세무회계과		2년	115		115	회계전문학사
	부동산학과		2년	70		70	부동산전문학사
	사회복지과		2년	110		110	사회복지전문학사
	공공행정서비스과		2년	50		50	행정전문학사
	항공서비스과		2년	49		49	항공서비스전문학사
	중국어비즈니스과		2년	55		55	언어전문학사
	일본어과		2년	55		55	언어전문학사
	문예창작과		2년	43		43	문학전문학사
	유아교육학과		3년	74		74	교육전문학사
	청소년교육상담과		2년	100		100	교육전문학사
AI·디 자인학 부	산업디자인학과		3년	80		80	디자인전문학사
	패션·리빙디자인과		2년	75		75	디자인전문학사
	커뮤니케이션디자인과		2년	53		53	디자인전문학사
	AI미디어디자인학과		3년	60		60	디자인전문학사
예술· 건강학 부	사회체육과		2년	90		90	체육전문학사
	뷰티 매니 지면 트과	메이크업·네일전공	2년	30		30	미용전문학사
		스킨케어·메디컬코스메틱전공	2년	30		30	미용전문학사
		헤어디자인전공	2년	30		30	미용전문학사
		방송스타일디렉터전공	2년	30		30	예술전문학사
	보건의료정보과		2년	60		60	보건전문학사
	실용음악과		2년	50		50	음악전문학사
	연극영상학과		3년	40		40	예술전문학사
자유전 공학부	자유전공학과		2년	104		104	-
계 6개학부 / 31개 학과 / 1개 자유전공학과				2,483		2,483	

※ 자유전공학부(학과)는 학과(전공) 배정 후 ‘졸업요건’에 따라 해당 학과의 ‘졸업자격’ 부여 및 ‘학위’를 수여함. 단, 학생설계전공의 경우 학위종별은 ‘창의융합전문학사’로 함.

설치학과 입학정원 및 학위종별(2026학년도)

학부명	학 과 명	수업 연한	입학정원			학 위 종 별
			주간	야간	계	
AI · SW 융합학부	AI게임소프트웨어학과	3년	75		75	공학전문학사
	컴퓨터공학과	3년	100		100	공학전문학사
	컴퓨터보안공학과	3년	75		75	공학전문학사
	전자공학과	3년	95		95	공학전문학사
	정보통신공학과	3년	70		70	공학전문학사
스마트시 스템공학 부	기계공학과	2년	100		100	공학전문학사
	산업경영공학과	2년	90		90	공학전문학사
	전기공학과	2년	115		115	공학전문학사
	토목공학과	2년	95		95	공학전문학사
	지적공간정보학과	2년	50		50	공학전문학사
	드론정보공학과	2년	60		60	공학전문학사
경영 · 휴 먼라이프 학부	경영학과	2년	105		105	경영전문학사
	세무회계과	2년	115		115	회계전문학사
	부동산경영과	2년	70		70	경영전문학사
	사회복지과	2년	110		110	사회복지전문학사
	공공행정서비스과	2년	50		50	행정전문학사
	항공서비스과	2년	49		49	항공서비스전문학사
	중국어비즈니스과	2년	55		55	언어전문학사
	일본어과	2년	55		55	언어전문학사
	문예창작과	2년	43		43	문학전문학사
	유아교육학과	3년	74		74	교육전문학사
	청소년교육상담과	2년	100		100	교육전문학사
예술 · 건 강학부	산업디자인학과	3년	80		80	디자인전문학사
	패션 · 리빙디자인과	2년	75		75	디자인전문학사
	커뮤니케이션디자인과	2년	53		53	디자인전문학사
	AI미디어디자인학과	3년	60		60	디자인전문학사
	사회체육과	2년	90		90	체육전문학사
	뷰티 매니지 먼트 과	메이크업 · 네일전공	2년	30	30	미용전문학사
		스킨케어 · 메디컬코스메틱 전공	2년	30	30	미용전문학사
		헤어디자인전공	2년	30	30	미용전문학사
		방송스타일디렉터전공	2년	30	30	예술전문학사
	보건의료정보과		2년	60	60	보건전문학사
	실용음악과		2년	50	50	음악전문학사
	연극영상학과		3년	40	40	예술전문학사
자유전공 학부	자유전공학과	2년	104		104	-
계 31개 학과 / 1개 자유전공학과			2,483		2,483	

※ 자유전공학부(학과)는 학과(전공) 배정 후 ‘졸업요건’에 따라 해당 학과의 ‘졸업자격’ 부여 및 ‘학위’를 수여함. 단, 학생설계전공의 경우 학위종별은 ‘창의융합전문학사’로 함.

설치학과 입학정원 및 학위종별(2025학년도)

학 과 명	수업 연한	입학정원			학 위 종 별
		주간	야간	계	
AI게임소프트웨어학과	3년	75		75	공학전문학사
컴퓨터공학과	3년	100		100	공학전문학사
컴퓨터보안공학과	3년	75		75	공학전문학사
전자공학과	3년	100		100	공학전문학사
정보통신공학과	3년	75		75	공학전문학사
AI·SW융합학부 자유전공학과	3년	34		34	-
기계공학과	2년	112		112	공학전문학사
산업경영공학과	2년	115		115	공학전문학사
전기공학과	2년	115		115	공학전문학사
토목공학과	2년	95		95	공학전문학사
지적공간정보학과	2년	50		50	공학전문학사
드론정보공학과	2년	60		60	공학전문학사
경영학과	2년	105		105	경영전문학사
세무회계과	2년	115		115	회계전문학사
부동산경영과	2년	80		80	경영전문학사
사회복지과	2년	110		110	사회복지전문학사
공공행정서비스과	2년	50		50	행정전문학사
항공서비스과	2년	49		49	항공서비스전문학사
중국어비즈니스과	2년	55		55	언어전문학사
일본어과	2년	55		55	언어전문학사
문예창작과	2년	43		43	문학전문학사
유아교육학과	3년	74		74	교육전문학사
청소년교육상담과	2년	100		100	교육전문학사
경영·휴먼라이프학부 자유전공학과	2년	30		30	-
산업디자인학과	3년	80		80	디자인전문학사
패션·리빙디자인과	2년	75		75	디자인전문학사
커뮤니케이션디자인과	2년	64		64	디자인전문학사
사회체육과	2년	90		90	체육전문학사
뷰티 메이크업·네일전공	2년	30		30	미용전문학사
매니 스킨케어·메디컬코스메틱전공	2년	30		30	미용전문학사
지먼 헤어디자인전공	2년	30		30	미용전문학사
트과 방송스타일디렉터전공	2년	30		30	예술전문학사
보건의료정보과	2년	60		60	보건전문학사
실용음악과	2년	50		50	음악전문학사
연극영상학과	3년	40		40	예술전문학사
자유전공학부 자유전공학과	2년	40		40	-
계(30개 학과 / 3개 자유전공학과)		2,491		2,491	

※ 자유전공학부(학과)는 학과(전공) 배정 후 ‘졸업요건’에 따라 해당 학과의 ‘졸업자격’ 부여 및 ‘학위’를 수여함

설치학과 입학정원 및 학위종별(2024학년도)

학 과 명		수업 연한	입학정원			학 위 종 별
			주간	야간	계	
산업경영공학과		2년	115		115	공학전문학사
기계공학과		2년	120		120	공학전문학사
토목공학과		2년	95		95	공학전문학사
지적공간정보학과		2년	50		50	공학전문학사
전기공학과		2년	115		115	공학전문학사
전자공학과		3년	100		100	공학전문학사
컴퓨터공학과		3년	100		100	공학전문학사
정보통신공학과		3년	75		75	공학전문학사
인터넷보안공학과		3년	66		66	공학전문학사
소프트웨어콘텐츠과		2년	115		115	공학전문학사
드론정보공학과		3년	46		46	공학전문학사
경영학과		2년	115		115	경영전문학사
세무회계과		2년	115		115	회계전문학사
부동산경영과		2년	100		100	경영전문학사
사회복지과		2년	115		115	사회복지전문학사
공공행정서비스상담과		2년	65		65	행정전문학사
항공서비스과		2년	49		49	항공서비스전문학사
중국어비즈니스과		2년	60		60	언어전문학사
일본어과		2년	70		70	언어전문학사
문예창작과		2년	60		60	문학전문학사
유아교육학과		3년	74		74	교육전문학사
청소년교육상담과		2년	112		112	교육전문학사
산업디자인학과		3년	80		80	디자인전문학사
패션·리빙디자인과		2년	80		80	디자인전문학사
커뮤니케이션디자인과		2년	75		75	디자인전문학사
사회체육과		2년	90		90	체육전문학사
뷰티 매니지 먼트과	메이크업·네일전공	2년	30		30	미용전문학사
	뷰티스킨케어전공		30		30	미용전문학사
	헤어디자인전공		30		30	미용전문학사
	스타일디렉터전공		30		30	예술전문학사
보건의료정보과		2년	60		60	보건전문학사
실용음악과		2년	50		50	음악전문학사
연극영상학과		3년	40		40	예술전문학사
계(29개 학과 / 4개 전공)			2,527	0	2,527	

설치학과 입학정원 및 학위종별(2023학년도)

학 과 명		수업 연한	입학정원			학 위 종 별
			주간	야간	계	
산업경영공학과		2년	115		115	공학전문학사
기계공학과		2년	115		115	공학전문학사
토목공학과		2년	95		95	공학전문학사
지적공간정보학과		2년	50		50	공학전문학사
전기공학과		2년	115		115	공학전문학사
전자공학과		3년	100		100	공학전문학사
컴퓨터공학과		3년	100		100	공학전문학사
정보통신공학과		3년	75		75	공학전문학사
인터넷보안공학과		3년	66		66	공학전문학사
소프트웨어콘텐츠과		2년	105		105	공학전문학사
드론정보공학과		3년	46		46	공학전문학사
경영학과		2년	105		105	경영전문학사
세무회계과		2년	115		115	회계전문학사
부동산경영과		2년	85		85	경영전문학사
사회복지과		2년	110		110	사회복지전문학사
공공행정서비스상담과		2년	65		65	행정전문학사
항공서비스과		2년	49		49	항공서비스전문학사
중국어비즈니스과		2년	60		60	언어전문학사
일본어과		2년	60		60	언어전문학사
문예창작과		2년	43		43	문학전문학사
유아교육학과		3년	74		74	교육전문학사
청소년교육상담과		2년	100		100	교육전문학사
산업디자인학과		3년	80		80	디자인전문학사
패션·리빙디자인과		2년	75		75	디자인전문학사
커뮤니케이션디자인과		2년	60		60	디자인전문학사
사회체육과		2년	90		90	체육전문학사
뷰티 매니지 먼트과	메이크업·네일전공	2년	30		30	미용전문학사
	뷰티스킨케어전공		30		30	미용전문학사
	헤어디자인전공		30		30	미용전문학사
	스타일디렉터전공		30		30	예술전문학사
보건의료정보과		2년	60		60	보건전문학사
실용음악과		2년	50		50	음악전문학사
연극영상학과		3년	40		40	예술전문학사
드론공학과		2년	15		15	공학전문학사
세무회계융합과		2년	4		4	회계전문학사
사회서비스상담복지과		2년	33		33	사회복지전문학사
문헌정보과		2년	32		32	문헌정보전문학사
엔터융합비즈니스과		2년	5		5	음악전문학사
뷰티패션융합과		2년	15		15	예술전문학사
계(35개 학과 / 4개 전공)			2,527	0	2,527	

설치학과 입학정원 및 학위종별(2022학년도)

학 과 명		수업 연한	입학정원			학 위 종 별
			주간	야간	계	
산업경영공학과		2년	115		115	공학전문학사
기계공학과		2년	115		115	공학전문학사
토목공학과		2년	95		95	공학전문학사
지적과		2년	50		50	지적전문학사
전기공학과		2년	115		115	공학전문학사
전자공학과		3년	100		100	공학전문학사
컴퓨터공학과		3년	100		100	공학전문학사
정보통신공학과		3년	75		75	공학전문학사
인터넷보안공학과		3년	66		66	공학전문학사
소프트웨어콘텐츠과		2년	105		105	공학전문학사
드론정보공학과		3년	46		46	공학전문학사
경영학과		2년	105		105	경영전문학사
세무회계과		2년	115		115	회계전문학사
부동산경영과		2년	85		85	경영전문학사
사회복지과		2년	110		110	사회복지전문학사
공공행정서비스상담과		2년	65		65	행정전문학사
항공서비스과		2년	49		49	항공서비스전문학사
중국어비즈니스과		2년	60		60	언어전문학사
일본어과		2년	60		60	언어전문학사
문예창작과		2년	43		43	문학전문학사
유아교육학과		3년	74		74	교육전문학사
청소년교육상담과		2년	100		100	교육전문학사
산업디자인학과		3년	80		80	디자인전문학사
패션·리빙디자인과		2년	75		75	디자인전문학사
커뮤니케이션디자인과		2년	60		60	디자인전문학사
사회체육과		2년	90		90	체육전문학사
뷰티 매니지 먼트과	메이크업·네일전공	2년	30		30	미용전문학사
	뷰티스킨케어전공		30		30	미용전문학사
	헤어디자인전공		30		30	미용전문학사
	스타일디렉터전공		30		30	예술전문학사
보건의료정보과		2년	60		60	보건전문학사
실용음악과		2년	50		50	음악전문학사
연극영상학과		3년	40		40	예술전문학사
드론공학과		2년	15		15	공업전문학사
세무회계융합과		2년	4		4	회계전문학사
사회서비스상담복지과		2년	33		33	사회복지전문학사
문헌정보과		2년	32		32	문헌정보전문학사
엔터융합비즈니스과		2년	5		5	음악전문학사
뷰티패션융합과		2년	15		15	예술전문학사
계(35개 학과 / 4개 전공)			2,527	0	2,527	

설치학과 입학정원 및 학위종별(2021학년도)

학 과 명		수업 연한	입학정원			학 위 종 별
			주간	야간	계	
산업경영공학과		2년	115		115	공업전문학사
기계공학과		2년	115		115	공업전문학사
토목공학과		2년	95		95	공업전문학사
지적과		2년	50		50	지적전문학사
전기공학과		2년	115		115	공업전문학사
전자공학과		3년	100		100	공업전문학사
컴퓨터공학과		3년	100		100	공업전문학사
정보통신공학과		3년	75		75	공업전문학사
인터넷보안공학과		3년	65		65	공업전문학사
소프트웨어콘텐츠과		2년	105		105	공업전문학사
드론정보공학과		3년	37		37	공업전문학사
경영학과		2년	80	25	105	경영전문학사
세무회계과		2년	115		115	회계전문학사
부동산경영과		2년	65	20	85	경영전문학사
사회복지과		2년	80	30	110	사회복지전문학사
공공행정서비스상담과		2년	65		65	행정전문학사
글로벌 비즈니스 학부	항공서비스전공	2년	39		39	항공서비스전문학사
	중국어비즈니스전공	2년	60		60	언어전문학사
	일본어비즈니스전공	2년	60		60	언어전문학사
문예창작과		2년	43		43	문학전문학사
유아교육학과		3년	64	20	84	교육전문학사
청소년교육복지과		2년	70	30	100	교육복지전문학사
산업디자인학과		3년	80		80	디자인전문학사
패션·리빙디자인과		2년	71		71	디자인전문학사
커뮤니케이션디자인과		2년	56		56	디자인전문학사
공연 예술학부	실용음악전공	2년	50		50	음악전문학사
	연극영상전공	3년	40		40	예술전문학사
사회체육과		2년	90		90	체육전문학사
뷰티매니지먼트과		2년	98	40	138	예술전문학사
보건의료정보과		2년	60		60	보건전문학사
드론공학과		2년	15		15	공업전문학사
엔터융합비즈니스과		2년	5		5	음악전문학사
뷰티패션융합과		2년	20		20	예술전문학사
세무회계융합과		2년	4		4	회계전문학사
사회서비스상담복지과		2년	30		30	사회복지전문학사
문헌정보과		2년	30		30	문헌정보전문학사
계(31개 학과 / 2개 학부 5개 전공)			2,362	165	2,527	

설치학과 입학정원 및 학위종별(2020학년도)

학 과 명		수업 연한	입학정원			학 위 종 별
			주간	야간	계	
산업경영공학과		2년	80	40	120	공업전문학사
기계공학과		2년	120		120	공업전문학사
토목공학과		2년	100		100	공업전문학사
지적과		2년	70		70	지적전문학사
전기과		2년	115		115	공업전문학사
전자공학과		3년	100		100	공업전문학사
컴퓨터공학과		3년	100		100	공업전문학사
정보통신공학과		3년	75		75	공업전문학사
인터넷응용보안공학과		3년	65		65	공업전문학사
소프트웨어콘텐츠과		2년	75	30	105	공업전문학사
드론정보공학과		3년	37		37	공업전문학사
경영학과		2년	80	30	110	경영전문학사
세무회계과		2년	120		120	회계전문학사
부동산경영과		2년	65	30	95	경영전문학사
사회복지과		2년	80	40	120	사회복지전문학사
행정과		2년	85		85	행정전문학사
글로벌 비즈니스 학부	영어비즈니스전공	2년	59		59	언어전문학사
	중국어비즈니스전공	2년	60		60	언어전문학사
	일본어비즈니스전공	2년	60		60	언어전문학사
문예창작과		2년	53		53	문학전문학사
유아교육학과		3년	64	20	84	교육전문학사
청소년교육복지과		2년	70	30	100	교육복지전문학사
산업디자인과		3년	80		80	디자인전문학사
패션텍스타일·세라믹과		2년	71		71	디자인전문학사
커뮤니케이션디자인과		2년	56		56	디자인전문학사
공연 예술학부	클래식공연예술전공	2년	20		20	음악전문학사
	실용음악전공	2년	50		50	음악전문학사
	연극영상전공	3년	40		40	예술전문학사
사회체육과		2년	90		90	체육전문학사
뷰티매니지먼트과		2년	80	80	160	예술전문학사
보건의료정보과		2년	60		60	보건전문학사
드론공학과		2년	10		10	공업전문학사
엔터융합비즈니스과		2년	17		17	음악전문학사
뷰티패션융합과		2년	17		17	예술전문학사
세무회계융합과		2년	10		10	회계전문학사
사회서비스상담복지과		2년	10		10	사회복지전문학사
계(36개 학과)			2,344	300	2,644	

설치학과 입학정원 및 학위종별(2019학년도)

학 과 명	수업 연한	입학정원			학 위 종 별
		주간	야간	계	
산업경영공학과	2년	80	40	120	공업전문학사
기계공학과	2년	120		120	공업전문학사
토목공학과	2년	100		100	공업전문학사
지적과	2년	70		70	지적전문학사
전기과	2년	120		120	공업전문학사
전자공학과	3년	105		105	공업전문학사
컴퓨터공학과	3년	100		100	공업전문학사
정보통신공학과	3년	80		80	공업전문학사
인터넷응용보안공학과	3년	65		65	공업전문학사
소프트웨어콘텐츠과	2년	75	30	105	공업전문학사
경영학과	2년	80	35	115	경영전문학사
세무회계과	2년	130		130	회계전문학사
부동산경영과	2년	70	32	102	경영전문학사
사회복지과	2년	90	47	137	사회복지전문학사
행정과	2년	85		85	행정전문학사
영어과	2년	59		59	언어전문학사
중국비즈니스과	2년	70		70	언어전문학사
일본어과	2년	40	30	70	언어전문학사
문예창작과	2년	53		53	문학전문학사
유아교육학과	3년	64	32	96	교육전문학사
청소년교육복지과	2년	70	30	100	교육복지전문학사
산업디자인과	3년	85		85	디자인전문학사
패션텍스타일·세라믹과	2년	71		71	디자인전문학사
커뮤니케이션디자인과	2년	56		56	디자인전문학사
클래식공연예술과	2년	0		0	음악전문학사
실용음악과	2년	50		50	음악전문학사
사회체육과	2년	90		90	체육전문학사
연극영상학과	3년	50		50	예술전문학사
뷰티매니지먼트과	2년	90	80	170	예술전문학사
보건의료정보과	2년	70		70	보건전문학사
계(30개 학과)		2,288	356	2,644	

설치학과 입학정원 및 학위종별(2018학년도)

학 과 명	수업 연한	입학정원			학 위 종 별
		주간	야간	계	
산업경영공학과	2년	80	30	110	공업전문학사
기계과	2년	110		110	공업전문학사
토목과	2년	110		110	공업전문학사
지적과	2년	75		75	지적전문학사
전기과	2년	110		110	공업전문학사
전자공학과	3년	100		100	공업전문학사
컴퓨터공학과	3년	100		100	공업전문학사
정보통신공학과	3년	75		75	공업전문학사
인터넷응용보안공학과	3년	65		65	공업전문학사
소프트웨어콘텐츠과	2년	70	30	100	공업전문학사
경영과	2년	80	30	110	경영전문학사
세무회계과	2년	120		120	회계전문학사
부동산경영과	2년	60	34	94	경영전문학사
사회복지과	2년	80	40	120	사회복지전문학사
행정과	2년	60	30	90	행정전문학사
영어과	2년	40	30	70	언어전문학사
중국비즈니스과	2년	40	30	70	언어전문학사
일본어과	2년	40	30	70	언어전문학사
문예창작과	2년	60		60	문학전문학사
유아교육학과	3년	64	32	96	교육전문학사
청소년교육복지과	2년	70	30	100	교육복지전문학사
산업디자인과	3년	75		75	디자인전문학사
패션텍스타일·세라믹과	2년	76		76	디자인전문학사
커뮤니케이션디자인과	2년	76		76	디자인전문학사
클래식공연예술과	2년	40		40	음악전문학사
실용음악과	2년	60		60	음악전문학사
사회체육과	2년	90		90	체육전문학사
연극영상학과	3년	70		70	예술전문학사
뷰티매니지먼트과	2년	80	80	160	예술전문학사
보건의료정보과	2년	60		60	보건전문학사
계(30개 학과)		2,236	426	2,662	

[별표2] (제23조의10 계약학과 정원 관련)(개정 2016.09.02, 2017.02.27., 2018.02.05., 2018.11.12.,2019.6.17.,2019.10.30.,2021.12.2.,2022.2.23.,2022.8.10.,2023.1.30.,2023.6.19.,2023.8.9.,2024.5.7.,2025.5.30.,2026.5.20.)

계약학과 모집인원 및 학위종별(2027학년도)

구 분	모 집 단 위	모집인원	학 위 종 별
조기취업형	A I 빅 데 이 터 학 과	20	공 학 전 문 학 사
	A I 융 합 서 비 스 학 과	15	공 학 전 문 학 사
	A I 인 프 라 학 과	20	공 학 전 문 학 사
	A I 콘 텐 츠 융 합 과	20	디 자 인 전 문 학 사
	A I 뮤 직 콘 텐 츠 기 획 과	10	음 악 전 문 학 사
	A I 메 디 컬 스 킨 · 스 파 과	35	미 용 전 문 학 사
	헤 어 · 메 이 크 업 과	70	미 용 전 문 학 사
계		190	

계약학과 모집인원 및 학위종별(2026학년도)

구 분	모 집 단 위	모집인원	학 위 종 별
조기취업형	A I · 빅 데 이 터 학 과	20	공 학 전 문 학 사
	A I 융 합 서 비 스 학 과	20	공 학 전 문 학 사
	A I 콘 텐 츠 융 합 과	20	디 자 인 전 문 학 사
	헤 어 · 메 이 크 업 과	80	미 용 전 문 학 사
	스 파 · 메 디 컬 스 킨 케 어 과	35	미 용 전 문 학 사
	A I 뮤 직 콘 텐 츠 기 획 과	15	음 악 전 문 학 사
계		190	

[별표3] (제52조의5 학교기업 설치 관련) <삭제(2024.8.6.)>

[별표4] (제23조의 14 협약학과 정원 관련)<삭제(2022.08.10.)>

[별표 5] (제23조의2 ③항 전공심화과정 정원 관련) (개정 2015.2.16., 2016.3.1., 2016.09.02, 2017.02.27., 2018.02.05., 2018.11.12., 2020.04.16., 2021.03.31., 2021.12.02., 2022.12.13., 2023.09.26., 2024.10.23., 2025.12.4., 2026.5.20.)

전공심화과정 모집인원 및 학위종별(2026학년도)

모 집 단 위	수업 연한	모집인원			학 위 종 별
		주간	야간	계	
산 업 경 영 공 학 과	2년		15	15	공 학 사
토 목 공 학 과	2년	15		15	공 학 사
지 적 공 간 정 보 학 과	2년		15	15	공 학 사
전 기 공 학 과	2년		15	15	공 학 사
전 자 공 학 과	1년	20		20	공 학 사
컴 퓨 터 공 학 과	1년	20		20	공 학 사
정 보 통 신 공 학 과	1년	20		20	공 학 사
컴 퓨 터 보 안 공 학 과	1년	20		20	공 학 사
드 론 정 보 공 학 과	1년	15		15	공 학 사
경 영 학 과	2년		15	15	경 영 학 사
부 동 산 경 영 학 과	2년	15		15	경 영 학 사
사 회 복 지 학 과	2년	25		25	사 회 복 지 학 사
문 예 창 작 학 과	2년		20	20	문 학 사
유 아 교 육 학 과	1년		50	50	교 육 학 사
청 소 년 교 육 상 담 학 과	2년	30		30	교 육 학 사
산 업 디 자 인 학 과	1년	30		30	디 자 인 학 사
패 션 · 리 빙 디 자 인 학 과	2년	15		15	디 자 인 학 사
커 뮤 니 케 이 션 디 자 인 학 과	2년	20		20	디 자 인 학 사
사 회 체 육 학 과	2년	20		20	체 육 학 사
뷰 티 매 니 지 먼 트 학 과	2년		30	30	예 술 학 사
보 건 의 료 정 보 학 과	2년	15		15	보 건 학 사
연 극 영 상 학 과	1년	40		40	예 술 학 사
엔 터 비 즈 니 스 학 과	2년	15		15	예 술 학 사
합 계(23개 학과)		335	160	495	

전공심화과정 모집인원 및 학위종별(2025학년도)

모 집 단 위	수업연한	모집인원			학 위 종 별
		주간	야간	계	
산 업 경 영 공 학 과	2년		15	15	공 학 사
토 목 공 학 과	2년	15		15	공 학 사
지 적 공 간 정 보 학 과	2년		15	15	공 학 사
전 기 공 학 과	2년		15	15	공 학 사
전 자 공 학 과	1년	30		30	공 학 사
컴 퓨 터 공 학 과	1년	20		20	공 학 사
정 보 통 신 공 학 과	1년	20		20	공 학 사
컴 퓨 터 보 안 공 학 과	1년	20		20	공 학 사
소 프 트 웨 어 콘 텐 츠 학 과	2년	15		15	공 학 사
드 론 정 보 공 학 과	1년	15		15	공 학 사
경 영 학 과	2년		15	15	경 영 학 사
부 동 산 경 영 학 과	2년	15		15	경 영 학 사
사 회 복 지 학 과	2년	30		30	사 회 복 지 학 사
문 예 창 작 학 과	2년		20	20	문 학 사
유 아 교 육 학 과	1년		50	50	교 육 학 사
청 소 년 교 육 상 담 학 과	2년	30		30	교 육 학 사
산 업 디 자 인 학 과	1년	30		30	디 자 인 학 사
패 션 · 리 빙 디 자 인 학 과	2년	15		15	디 자 인 학 사
커 뮤 니 케 이 션 디 자 인 학 과	2년	20		20	디 자 인 학 사
사 회 체 육 학 과	2년	20		20	체 육 학 사
뷰 티 매 니 지 먼 트 학 과	2년		15	15	예 술 학 사
연 극 영 상 학 과	1년	40		40	예 술 학 사
엔 터 비 즈 니 스 학 과	2년	15		15	예 술 학 사
합 계(23개 학과)		350	145	495	

전공심화과정 모집인원 및 학위종별(2024학년도)

모 집 단 위	수업연한	모집인원			학 위 종 별
		주간	야간	계	
산 업 경 영 공 학 과	2년		15	15	공 학 사
토 목 공 학 과	2년	20		20	공 학 사
지 적 공 간 정 보 학 과	2년		15	15	공 학 사
전 기 공 학 과	2년		15	15	공 학 사
전 자 공 학 과	1년	30		30	공 학 사
컴 퓨 터 공 학 과	1년	20		20	공 학 사
정 보 통 신 공 학 과	1년	20		20	공 학 사
인 터 넷 보 안 공 학 과	1년	20		20	공 학 사
소 프 트 웨 어 콘 텐 츠 학 과	2년	15		15	공 학 사
드 론 정 보 공 학 과	1년	15		15	공 학 사
경 영 학 과	2년		15	15	경 영 학 사
부 동 산 경 영 학 과	2년	15		15	경 영 학 사
사 회 복 지 학 과	2년	20		20	사 회 복 지 학 사
문 예 창 작 학 과	2년		20	20	문 학 사
유 아 교 육 학 과	1년		50	50	교 육 학 사
청 소 년 교 육 상 담 학 과	2년	30		30	교 육 학 사
산 업 디 자 인 학 과	1년	30		30	디 자 인 학 사
패 션 · 리 빙 디 자 인 학 과	2년	15		15	디 자 인 학 사
커 뮤 니 케 이 션 디 자 인 학 과	2년	20		20	디 자 인 학 사
사 회 체 육 학 과	2년	20		20	체 육 학 사
뷰 티 매 니 지 먼 트 학 과	2년		15	15	예 술 학 사
연 극 영 상 학 과	1년	40		40	예 술 학 사
엔 터 비 즈 니 스 학 과	2년	15		15	예 술 학 사
합 계(23개 학과)		345	145	490	

전공심화과정 모집인원 및 학위종별(2023학년도)

모 집 단 위	수업연한	모집인원			학 위 종 별
		주간	야간	계	
산 업 경 영 공 학 과	2년		15	15	공 학 사
토 목 공 학 과	2년	20		20	공 학 사
지 적 공 간 정 보 학 과	2년		15	15	공 학 사
전 기 공 학 과	2년		15	15	공 학 사
전 자 공 학 과	1년	30		30	공 학 사
컴 퓨 터 공 학 과	1년	20		20	공 학 사
정 보 통 신 공 학 과	1년	20		20	공 학 사
인 터 넷 보 안 공 학 과	1년	20		20	공 학 사
소 프 트 웨 어 콘 텐 츠 학 과	2년	15		15	공 학 사
드 론 정 보 공 학 과	1년	15		15	공 학 사
경 영 학 과	2년		15	15	경 영 학 사
부 동 산 경 영 학 과	2년	15		15	경 영 학 사
사 회 복 지 학 과	2년	20		20	사 회 복 지 학 사
문 예 창 작 학 과	2년		20	20	문 학 사
유 아 교 육 학 과	1년		50	50	교 육 학 사
청 소 년 교 육 상 담 학 과	2년	30		30	교 육 학 사
산 업 디 자 인 학 과	1년	30		30	디 자 인 학 사
패 션 · 리 빙 디 자 인 학 과	2년	15		15	디 자 인 학 사
커 뮤 니 케 이 션 디 자 인 학 과	2년	20		20	디 자 인 학 사
사 회 체 육 학 과	2년	20		20	체 육 학 사
뷰 티 매 니 지 먼 트 학 과	2년		15	15	예 술 학 사
연 극 영 상 학 과	1년	40		40	예 술 학 사
드 론 공 학 과	2년		15	15	공 학 사
엔 터 윙 합 비 즈 니 스 학 과	2년	15		15	예 술 학 사
합 계(24개 학과)		345	160	505	

전공심화과정 모집인원 및 학위종별(2022학년도)

모 집 단 위	수업연한	모집인원			학 위 종 별
		주간	야간	계	
산 업 경 영 공 학 과	2년		15	15	공 학 사
토 목 공 학 과	2년	20		20	공 학 사
지 적 학 과	2년		15	15	공 학 사
전 기 공 학 과	2년		15	15	공 학 사
전 자 공 학 과	1년	30		30	공 학 사
컴 퓨 터 공 학 과	1년	20		20	공 학 사
정 보 통 신 공 학 과	1년	20		20	공 학 사
인 터 넷 보 안 공 학 과	1년	20		20	공 학 사
소 프 트 웨 어 콘 텐 츠 학 과	2년	15		15	공 학 사
경 영 학 과	2년		15	15	경 영 학 사
부 동 산 경 영 학 과	2년	15		15	경 영 학 사
사 회 복 지 학 과	2년	25		25	사 회 복 지 학 사
문 예 창 작 학 과	2년		20	20	문 학 사
유 아 교 육 학 과	1년		60	60	교 육 학 사
청 소 년 교 육 상 담 학 과	2년	30		30	청 소 년 학 사
산 업 디 자 인 학 과	1년	30		30	디 자 인 학 사
패 션 · 리 빙 디 자 인 학 과	2년	15		15	디 자 인 학 사
커 뮤 니 케 이 션 디 자 인 학 과	2년	20		20	디 자 인 학 사
사 회 체 육 학 과	2년	20		20	체 육 학 사
뷰 티 매 니 지 먼 트 학 과	2년		15	15	예 술 학 사
연 극 영 상 학 과	1년	40		40	예 술 학 사
드 론 공 학 과	2년		15	15	공 학 사
엔 터 용 합 비 즈 니 스 학 과	2년	15		15	예 술 학 사
합 계(23개 학과)		335	170	505	

전공심화과정 입학정원 및 학위종별(2021학년도)

모 집 단 위	수업연한	입학정원			학 위 종 별
		주간	야간	계	
산 업 경 영 공 학 과	2년		15	15	공 학 사
토 목 공 학 과	2년	20	15	35	공 학 사
지 적 학 과	2년		15	15	공 학 사
전 기 공 학 과	2년		15	15	공 학 사
전 자 공 학 과	1년	30		30	공 학 사
컴 퓨 터 공 학 과	1년	20		20	공 학 사
정 보 통 신 공 학 과	1년	20		20	공 학 사
인 터 넷 보 안 공 학 과	1년	20		20	공 학 사
소 프 트 웨 어 콘 텐 츠 학 과	2년	15		15	공 학 사
경 영 학 과	2년		15	15	경 영 학 사
부 동 산 경 영 학 과	2년	15		15	경 영 학 사
사 회 복 지 학 과	2년	20		20	사 회 복 지 학 사
중 국 비 즈 니 스 학 과	2년		15	15	문 학 사
문 예 창 작 학 과	2년		25	25	문 학 사
유 아 교 육 학 과	1년		60	60	교 육 학 사
청 소 년 교 육 복 지 학 과	2년	30		30	청 소 년 학 사
산 업 디 자 인 학 과	1년	30		30	디 자 인 학 사
패 션 · 리 빙 디 자 인 학 과	2년	15		15	디 자 인 학 사
커 뮤 니 케 이 션 디 자 인 학 과	2년	20		20	디 자 인 학 사
사 회 체 육 학 과	2년	20		20	체 육 학 사
연 극 영 상 학 과	1년	40		40	예 술 학 사
합 계(21개 학과)		315	175	490	

전공심화과정 입학정원 및 학위종별(2020학년도)

모 집 단 위	수업연한	입학정원			학 위 종 별
		주간	야간	계	
산 업 경 영 공 학 과	2년		15	15	공 학 사
토 목 공 학 과	2년	20	15	35	공 학 사
지 적 학 과	2년		15	15	공 학 사
전 기 공 학 과	2년		15	15	공 학 사
전 자 공 학 과	1년	30		30	공 학 사
컴 퓨 터 공 학 과	1년	20		20	공 학 사
정 보 통 신 공 학 과	1년	20		20	공 학 사
인 터 넷 응 용 보 안 공 학 과	1년	20		20	공 학 사
소 프 트 웨 어 콘 텐 츠 학 과	2년	15		15	공 학 사
경 영 학 과	2년	15	15	30	경 영 학 사
부 동 산 경 영 학 과	2년	15		15	경 영 학 사
사 회 복 지 학 과	2년	20		20	사 회 복 지 학 사
중 국 비 즈 니 스 학 과	2년		15	15	문 학 사
문 예 창 작 학 과	2년		25	25	문 학 사
유 아 교 육 학 과	1년		60	60	교 육 학 사
청 소 년 교 육 복 지 학 과	2년	30		30	청 소 년 학 사
산 업 디 자 인 학 과	1년	30		30	디 자 인 학 사
패 셴 텍 스 타 일 · 세 라 믹 학 과	2년	15		15	디 자 인 학 사
커 뮤 니 케 이 셴 디 자 인 학 과	2년	20		20	디 자 인 학 사
사 회 체 육 학 과	2년	20		20	체 육 학 사
연 극 영 상 학 과	1년	40		40	예 술 학 사
합 계(21개 학과)		330	175	505	

전공심화과정 입학정원 및 학위종별(2019학년도)

모 집 단 위	수업연한	입학정원			학 위 종 별
		주간	야간	계	
산 업 경 영 공 학 과	2년		15	15	공 학 사
토 목 공 학 과	2년	20	15	35	공 학 사
전 기 공 학 과	2년		15	15	공 학 사
전 자 공 학 과	1년	30		30	공 학 사
컴 퓨 터 공 학 과	1년	20		20	공 학 사
정 보 통 신 공 학 과	1년	20		20	공 학 사
소 트 웨 어 콘 텐 츠 학 과	2년	15		15	공 학 사
경 영 학 과	2년	15	15	30	경 영 학 사
부 동 산 경 영 학 과	2년	15		15	경 영 학 사
행 정 학 과	2년	15		15	행 정 학 사
중 국 비 즈 니 스 학 과	2년		15	15	문 학 사
문 예 창 작 학 과	2년		25	25	문 학 사
유 아 교 육 학 과	1년		30	30	교 육 학 사
청 소 년 교 육 복 지 학 과	2년	30		30	청 소 년 학 사
산 업 디 자 인 학 과	1년	30		30	디 자 인 학 사
패 셴 텍 스 타 일 · 세 라 믹 학 과	2년	15		15	디 자 인 학 사
커 뮤 니 케 이 션 디 자 인 학 과	2년	20		20	디 자 인 학 사
클 래 식 공 연 예 술 학 과	2년	15		15	음 악 학 사
사 회 체 육 학 과	2년	20		20	체 육 학 사
연 극 영 상 학 과	1년	20		20	예 술 학 사
합 계(20개 학과)		300	130	430	

전공심화과정 입학정원 및 학위종별(2018학년도)

모 집 단 위	수업연한	입학정원			학 위 종 별
		주간	야간	계	
산 업 경 영 공 학 과	2년		15	15	공 학 사
토 목 공 학 과	2년	20	15	35	공 학 사
전 기 공 학 과	2년		15	15	공 학 사
전 자 공 학 과	1년	20		20	공 학 사
컴 퓨 터 공 학 과	1년	20		20	공 학 사
정 보 통 신 공 학 과	1년	20		20	공 학 사
경 영 학 과	2년	15	15	30	경 영 학 사
부 동 산 경 영 학 과	2년	15		15	경 영 학 사
중 국 비 즈 니 스 학 과	2년	15		15	문 학 사
문 예 창 작 학 과	2년		25	25	문 학 사
유 아 교 육 학 과	1년		25	25	교 육 학 사
청 소 년 교 육 복 지 학 과	2년	30		30	청 소 년 학 사
산 업 디 자 인 학 과	1년	30		30	디 자 인 학 사
패션텍스타일·세라믹학과	2년		15	15	디 자 인 학 사
커뮤니케이션디자인학과	2년	20		20	디 자 인 학 사
클 래 식 공 연 예 술 학 과	2년	15		15	음 악 학 사
사 회 체 육 학 과	2년	20		20	체 육 학 사
연 극 영 상 학 과	1년	20		20	예 술 학 사
합 계(18개 학과)		260	125	385	

명지전문대학 규정 / 2-1-1 학칙

[별표6](23조의 15 시간제등록생 정원 관련) (개정 2015.2.16.,2016.3.1., 2016. 9. 2, 2017.02.27. , 2018.2.5., 2018.11.12)

모집단위	정원	
	별도반	통합반
산업시스템경영과		2
기계공학과		2
토목공학과		2
지적과		2
전기과		2
전자공학과		2
컴퓨터공학과		2
정보통신공학과		2
인터넷응용보안공학과		2
소프트웨어콘텐츠과		2
경영학과	100	2
세무회계과		2
부동산경영과		2
사회복지과	30	3
행정과		2
영어과		2
중국비즈니스과		2
일본어과		2
문예창작과		2
청소년교육복지과		2
산업디자인과		2
패션텍스타일·세라믹과		2
커뮤니케이션디자인과		2
클래식공연예술과		2
실용음악과	30	2
연극영상학과		5
사회체육과		2
뷰티매니지먼트과	30	2
계	190	60

[별표7] (제23조의 8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에 의한 학위의 종류)(신설 2018.11.12., 2019.10.30)

학점은행제 대학의 장에 의한 학위종별

전공명				학위종별			
경	영	학		경	영	전	문 학 사
사	회	복	지	사	회	복	지 전 문 학 사
실	용	음	악	음	악	전	문 학 사
뷰	티	매	니 지 먼 트	예	술	전	문 학 사

[별표8] (제22조의2 제1항제4호 모듈전공 관련)(신설 2022.08.10.)

모듈전공 모집인원 및 학위종별

구 분	모 집 단 위	모집인원	학 위 종 별
모듈전공	스 마 트 관 광	30	스 마 트 관 광 전 문 학 사
계		30	

[별표9](제23조의19 정원외 외국인 유학생 전담학과 설치 및 운영 관련)(신설 2026.3.30.)

유학생 전담학과 입학정원 및 학위종별

모 집 계 열	학 과 명	수 업 연 한	입 학 정 원	학 위 종 별
인 문 사 회	노 인 요 양 복 지 학 과	2년	00명	요 양 복 지 전 문 학 사
예 체 능	K - 뮤 직 아 트 학 과	2년	00명	음 악 전 문 학 사
예 체 능	K - 뷰 티 매 니 지 먼 트 학 과	2년	00명	예 술 전 문 학 사
인 문 사 회	항공•호텔관광비즈니스학과	2년	00명	관 광 전 문 학 사
인 문 사 회	한 국 어 한 국 문 화 학 과	2년	00명	한 국 어 교 육 전 문 학 사

[별지 제1호](제31조 졸업 관련)(개정 2019.02.27., 2022.08.10)

제 호

학 위 증

성 명 : ○ ○ ○

○○○○년 ○월 ○일생

위 사람은 우리대학 소정의 전 과정(수업연한)을 이수하여
전문학사의 자격을 갖추었으므로 아래의 전문학사 학위를 수여함.

○○○○과 : ○○○전문학사

○○○○전공 : ○○○전문학사

부전공 : ○○○과(전공)

년 월 일

명지전문대학 총 장 ○ ○ ○ (인)

학위번호 : 명지-0000-0000

[별지 제2호](제31조 졸업 관련)(개정 2019.02.27., 2022.08.10)

제 호

학 위 증

성 명 : ○ ○ ○

○○○○년 ○월 ○일생

위 사람은 우리대학 소정의 전 과정을 이수하여
전문학사의 자격을 갖추었으므로 아래의 전문학사 학위를 수여함.

○○○과 : ○○○전문학사

○○○전공 : ○○○전문학사

부전공 : ○○○과(전공)

년 월 일

명지전문대학 총 장 ○ ○ ○ (인)

학위번호 : 명지-0000-0000

[별 지 제 3 호] (제23조의 6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에 의한 학위수여 관련) (개정 2018.11.12.)

제 호

학 위 증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전 공 :

위 사람은 명지전문대학에서 ()전문학사 자격을 취득하였기에 학점인정등에 관한법률 제9조 및 학칙 제23조의 6 규정에 의하여 이 증서를 수여함.

년 월 일

명지전문대학 총장

관할청 학위등록번호 : 명지전문대학 - 학점 - 연도 - 0000

※ 관할청은 당해연도 정부조직법에 준함.

[별지 제4호](제31조 졸업 관련)

제 호

학 위 증

성 명 :

년 월 일생

위 사람은 우리대학 학과에서 소정의 전 과정을 이수하고 학사의
자격을 얻었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함.

년 월 일

명지전문대학 총장

관할청 학위등록번호 : 명지____(학)____

※ 관할청은 당해연도 정부조직법에 준함.